

농작물 병해충

# 위기대응 실무매뉴얼



농촌진흥청



# 목차 | Contents



## 제1장 개요

1. 목적	3
2. 추진방향	3
3. 법적근거	3
4. 적용범위	4
5. 병해충에 의한 위기 종류 및 관리 주체	4
6. 용어정리	6
7. 위기관리	8
8. 위기대응 방법 및 판단/고려 요소	12
9. 위기관리 업무수행체계	13

## 제2장 일반병해충 예찰·방제

1. 병해충 발생 단계별 수행할 내용	19
2 일반병해충 종류별 조치할 사항	21
참고   일반병해충 업무 체계도	38

## 제3장 돌발병해충 예찰·방제

1. 돌발병해충 발생 단계별 수행할 내용	41
2. 대상 병해충	42
3. 돌발병해충 발생 단계별 조치할 내용	42
4. 사후관리 및 금후 대처방안 강구	49
참고 1   비래·돌발병해충 업무 체계도	51
참고 2   돌발병해충 “방제대책 협의체” 구성 및 운영	52
참고 3   돌발병해충 “공동방제의 날” 운영	53

## 제4장 외래·검역병해충 예찰·방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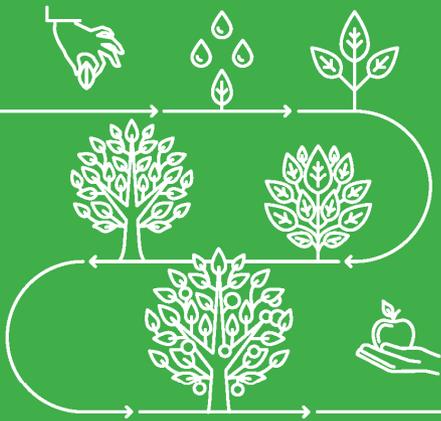
1. 위기해소 단계별 세부대책	57
2. 조치내용	59
3. 기관별/부서별 임무 및 역할	65
참고 1   손실보상금 청구 절차	68
참고 2   공적방제 업무 체계도	69

## 별지서식

별지서식	73
------	----



# 제 1 장 개 요







## 1. 목 적

이 매뉴얼은 식물방역법과 병해충 예찰·방제 기본지침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이 급격히 발생하거나 확산이 우려될 때 주관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,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임무와 역할, 조치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농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



## 2. 추진방향

- 일반 및 외래·검역병해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 구축
- 병해충 발생에 따른 위기상황별 역할과 임무, 예찰·방제 매뉴얼 정립



## 3. 법적근거

- 식물방역법(법률 제14299호)
- 농어업재해대책법(법률 제11563호)
-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에 관한 규정(농촌진흥청 고시 제2017-36호)
- 농촌진흥청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·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(농촌진흥청 고시 제2017-37호)
-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(농촌진흥청 고시 제2017-38호)
- 농작물병해충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(농촌진흥청 고시 제2017-39호)
- 식물병해충 예찰·방제 기본 지침(2018~2022), 농림축산식품부
  - ※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(대통령훈령 2011.6.10. 제285호)



#### 4. 적용범위

- 농작물 병해충 발생에 따른 위기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되는 농촌진흥청 및 유관기관의 대비/대응활동에 적용
- 농작물 병해충 발생으로 인해 농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외래·검역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산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



#### 5. 병해충에 의한 위기 종류 및 관리 주체

##### » 일반병해충 (관리주체 : 농업인)

- 작목별 기상 및 재해, 시기별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
-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·관찰포에서 발생하는 병해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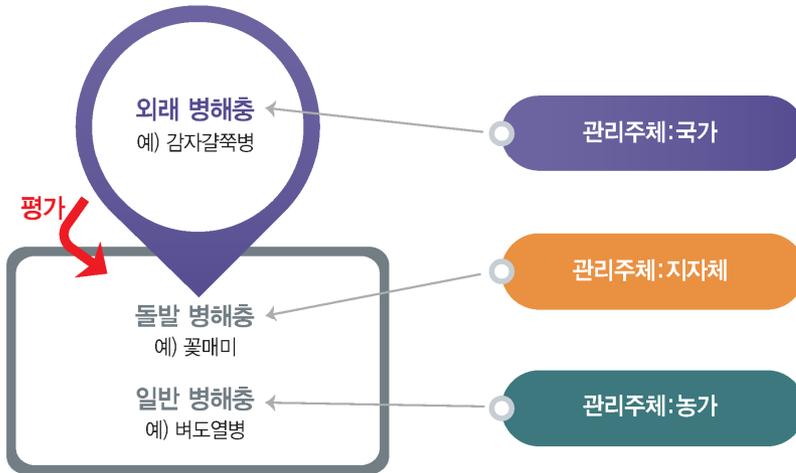
##### » 돌발병해충 (관리주체 : 농업인, 지자체)

- 기후변화 및 작부체계 다양화 등에 의해 발생하는 병해충
-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외래병해충

##### » 외래·검역병해충 공적방제 (관리주체 : 국가, 지자체)

- 금지병해충, 관리병해충 또는 이와 동등한 위험이 있는 병해충
- 식물방역법 제31조에 따라 공적방제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병해충

## » 일반병해충, 돌발병해충, 외래·검역병해충의 구분 및 처리방법



구분	외래 병해충	돌발 병해충	일반 병해충
분류기준	국내에 분포하지 않는 병해충	돌발적으로 증가한 병해충	널리 분포되어 정착된 병해충
방제명령	국가명령 (박멸)	지자체명령 (밀도감소)	-
손실보상	국가	지자체	-
비용지원	국가	국가 또는 지자체	지자체

❖ 분류 및 방제 결정: 분포역학조사 → 위험도평가 → 방제대책회의 → 농촌진흥청장 결정

### ☐ (외래 → 일반) 전환기준

- 박멸이 불가능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병해충 예찰·방제대책회의(필요시 관계기관 협의) 자문을 받아 농촌진흥청장이 결정

### ☐ (일반 → 돌발) 전환기준

- 일부지역에서 농·임산물 생산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병해충 예찰·방제대책회의 자문을 받아 농촌진흥청장이 결정



## 6. 용어정리

- » “**병해충 분류동정**”이란 예찰과정 등에서 발견된 병해충에 대하여 생물의 분류학상 소속 혹은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» “**병해충 위험평가**”란 병해충 분류동정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분류동정이 끝난 당해 병해충의 국내분포·국내자생·침입여부 등의 확인과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방제대책 추진 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.
- » “**일반병해충**”이란 국내 분포 및 비래하면서 정기적 또는 일정한 시기에 반복되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중점 방제대상 병해충을 말한다.
- » “**검역병해충**”이란 식물방역법상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으로 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아니한 병해충과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으로 금지병해충<sup>1)</sup> 또는 관리병해충<sup>2)</sup>을 말한다.
- » “**외래병해충**”이란 국내에 분포기록이 없는 병해충으로서 지리적 분포 등을 감안할 때 외국으로부터 유입되었다고 판단되는 병해충을 말한다.
- » “**돌발병해충**”이란 기후변화,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로 인하여 돌발적으로 발생되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.
- » “**비래병해충**”이란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 기류를 타고 오는 병해충으로 농촌 진흥청장이 인정하는 병해충을 말한다.

1)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그 병해충이 붙어 있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병해충

2)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해충

- » “**공적방제**”란 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및 시·도지사가 해당 병해충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방제를 말한다.
- » “**중점 방제대상 병해충**”이란 농경지나 산림에서 방제를 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병해충을 말한다.
- » “**농·임 이동병해충**”이란 농경지와 산림으로 옮겨 다니면서 피해를 크게 입힌 병해충으로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병해충을 말한다.
- » “**예찰**”이란 병해충이 발생한 지역과 확산 우려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, 발생정도,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.
- » “**방제**”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, 이미 발생한 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- » “**임시조치**”란 식물방제관 또는 식물검역관이 외래·돌발병해충이 발생하여 피해 또는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히 취하는 방제활동을 말한다.
- » “**병해충위험평가위원회**”란 외래병해충 여부, 예상 피해정도, 긴급방제 필요성과 방제방법 등 병해충 위험평가를 결정하는 기구로서 그 운용방법 등에 관해서는 농촌진흥청 고시로 정한다.



## 7. 위기관리

### 가. 위기상황 판단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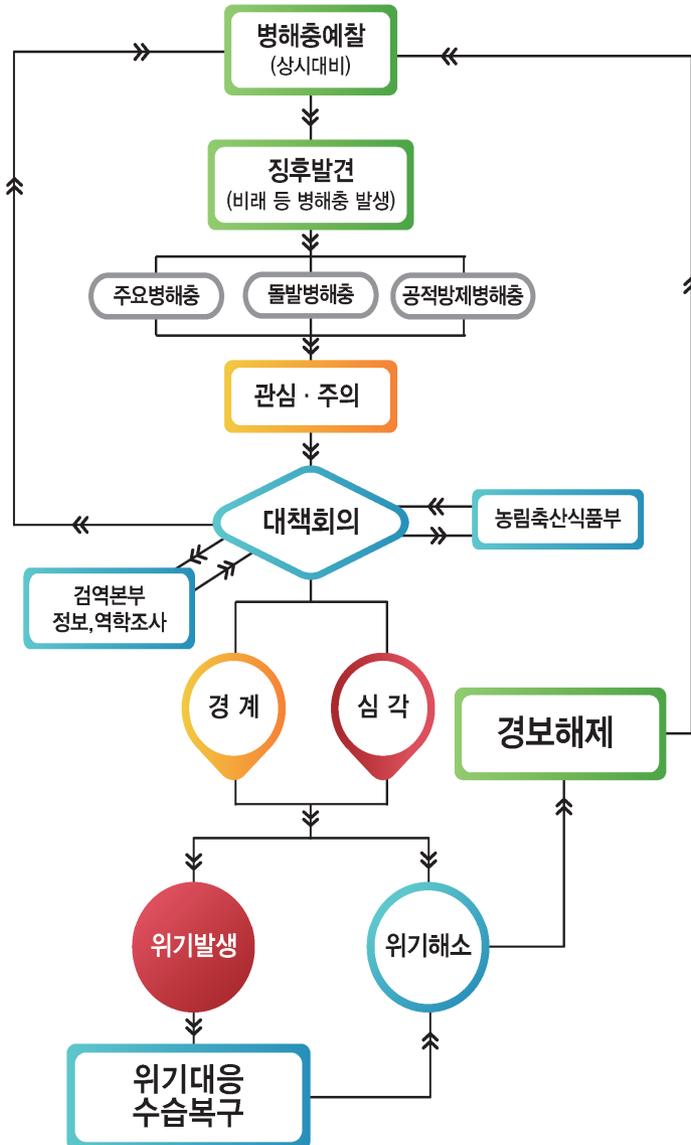
상 황	판 단 기 준
<p><b>관 심</b> <b>[예보]</b> (Blue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병해충의 감염위험도 및 비래해충 채집 증가</li> <li>○ 농가신고 등 외래·돌발 및 검역병해충의 발생 정보 입수</li> <li>○ 과거 외래·돌발·검역병해충 발생 지역, 시기 및 작물의 이상 징후</li> <li>○ 인접국가에서 대규모 병해충 발생 및 국내유입 징후</li> </ul>
<p><b>주 의</b> <b>[주의보]</b> (Yellow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병해충의 감염위험도 및 비래해충 채집 증가</li> <li>○ 농가신고 등 외래·돌발 및 검역병해충의 발생 정보 입수</li> <li>○ 과거 외래·돌발·검역병해충 발생 지역, 시기 및 작물의 이상 징후</li> <li>○ 인접국가에서 대규모 병해충 발생 및 국내유입 징후</li> </ul>
<p><b>경 계</b> <b>[경보]</b> (Orange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요 병해충이 국지적으로 피해가 크고 전국적으로 확산 * (전국적 확산) 농작물병해충 방제대책회의 또는 전문가회의 판단</li> <li>○ 외래·돌발 및 검역병해충이 타 지역으로 확산</li> <li>○ 인접국가에서 유입된 병해충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어 피해 증가</li> <li>○ 중앙과 지방, 부처 간 상황공유 및 공동방제 필요</li> <li>○ 방제가 곤란하여 협업방제가 필요할 때</li> </ul>
<p><b>심 각</b> <b>[긴급]</b> (Red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병해충 발생 피해로 인하여 해당 작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수출 등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경우</li> <li>○ 지역적 규모로 발생한 외래·돌발병해충이 타 지역으로 확산 되어 중앙정부의 통제가 필요할 때</li> <li>○ 인접국가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, 타 지역으로 전파되고 전국적 확산 징후</li> <li>○ 국가적으로 재난 수준의 피해가 예상될 때</li> </ul>

## 나. 병해충 위기관리 발령 체계

### 1) 병해충 종류 및 발생상황에 따른 대처 단계 결정

○ 접수 → 보고 → 사전협의 → 계획수립(대책회의) → 실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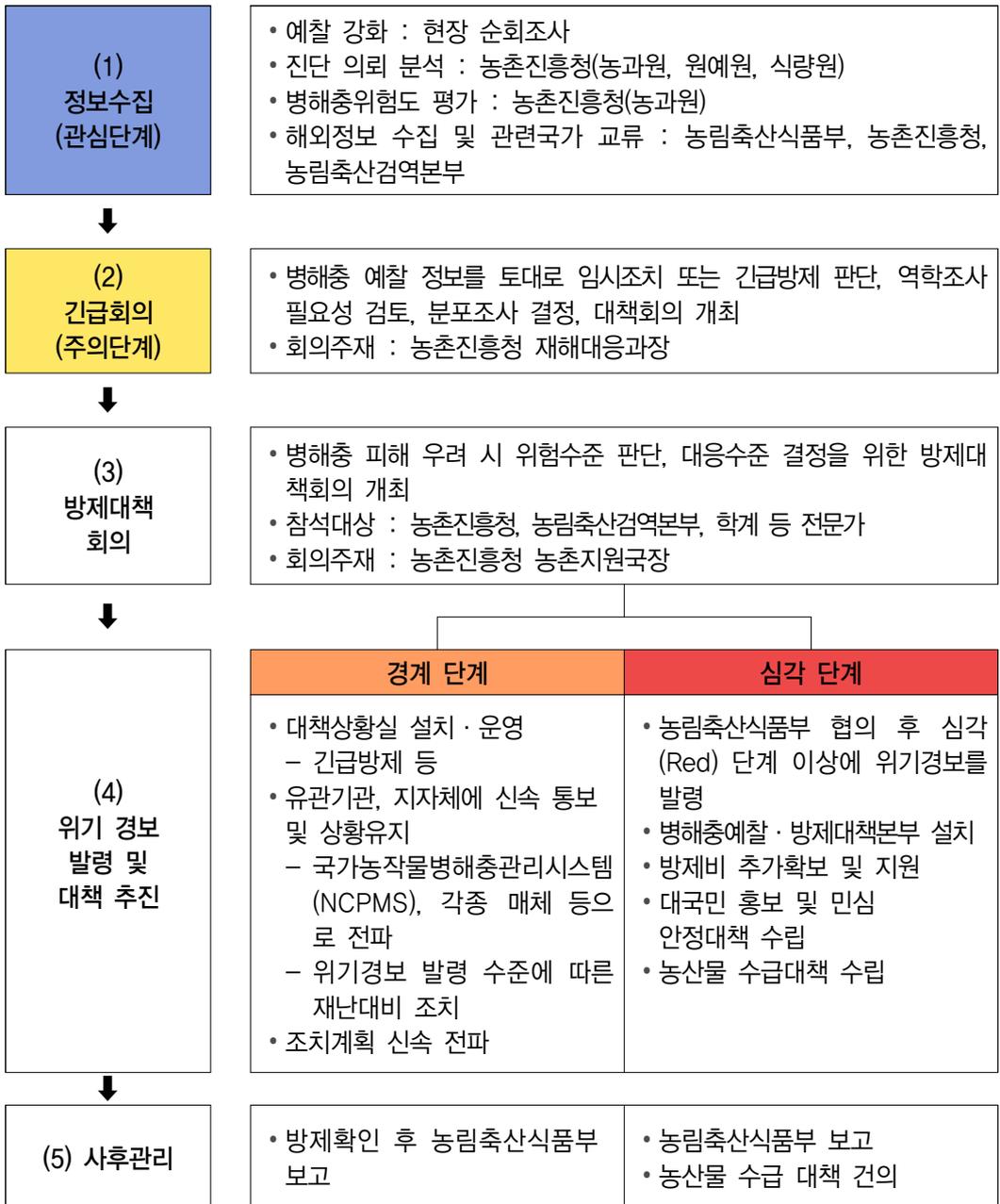
### 2) 위기관리 발령 체계도



다. 위기 단계별 대응 조치

위기 단계	조치/수행 내용
<p>관심 단계 [예 보]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병해충 발생 조사 및 정보 수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농작물 재배포장 및 우심농경지 예찰</li> <li>- 국내·외 관련정보 수집 및 보도자료 작성 배부</li> </ul> </li> <li>○ 과거 병해충 발생지역 중심 예찰활동 강화</li> <li>○ 실무 사전협의 및 병해충 발생정보 확산</li> </ul>
<p>주의 단계 [주의보]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취약지역 중심 집중예찰 및 방제 기술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장 임시조치 및 방제 관련정보 제공</li> </ul> </li> <li>○ 농가대상 방제 홍보로 자율적 방제활동 지원</li> <li>○ 병해충 피해 우려 시 분포조사 실시, 위험수준 판단, 대응수준 결정을 위한 대책회의</li> <li>○ 위험도평가 및 필요시 유관기관 방제 협조 요청</li> </ul>
<p>경계 단계 [경 보]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병해충 발생 위험성 인지 및 집중 홍보</li> <li>○ 해당병해충 대책상황실 운영(중앙, 지자체 등)</li> <li>○ 공동 방제 및 현장 방제지도, 농업인교육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장지원단 순회 점검 및 기술지원</li> </ul> </li> <li>○ 유관기관, 지자체 등 업무 협력 및 상황 전파</li> <li>○ 긴급방제명령에 따른 사후관리 추진</li> </ul>
<p>심각 단계 [긴 급]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」 설치·운영(농식품부)</li> <li>○ 병해충 위험성 대국민 홍보 및 실시간 상황전파</li> <li>○ 방제 강제 집행으로 전국적 확산 위험 회피</li> <li>○ 농작물 안정생산 및 민심안정대책 수립</li> </ul>

## 라. 위기관리 절차



## 8. 위기대응 방법 및 판단/고려 요소

### 가. 위기대응 방법

- 농작물 병해충 발생 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자동 발동
- 병해충 발생·확산 정보 파악 및 관련 정보 신속 전파
  - 유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관련부서, 작물보호협회, 방송사 등
- 병해충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신속한 대응조치 추진
  - 위기 단계별 조치내용 신속 이행 및 현장 지도
  -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피해 예방대책 추진
  - 농작물 병해충 피해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 자동 발령
  -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점검 및 동원 협조체계 가동

### 나. 위기판단 고려 요소

#### 1) 주요 병해충

- 관련국가의 비래해충 발생상황 및 국내 비래 정도
- 기상 및 예측모형에 의한 병해충 발생 위험 전망
- 병해충별 발생 예상되는 시기에 발생 밀도 및 확산 정도
- 기상 전망에 따른 병해충 확산 및 피해 예상 정도

#### 2) 돌발 병해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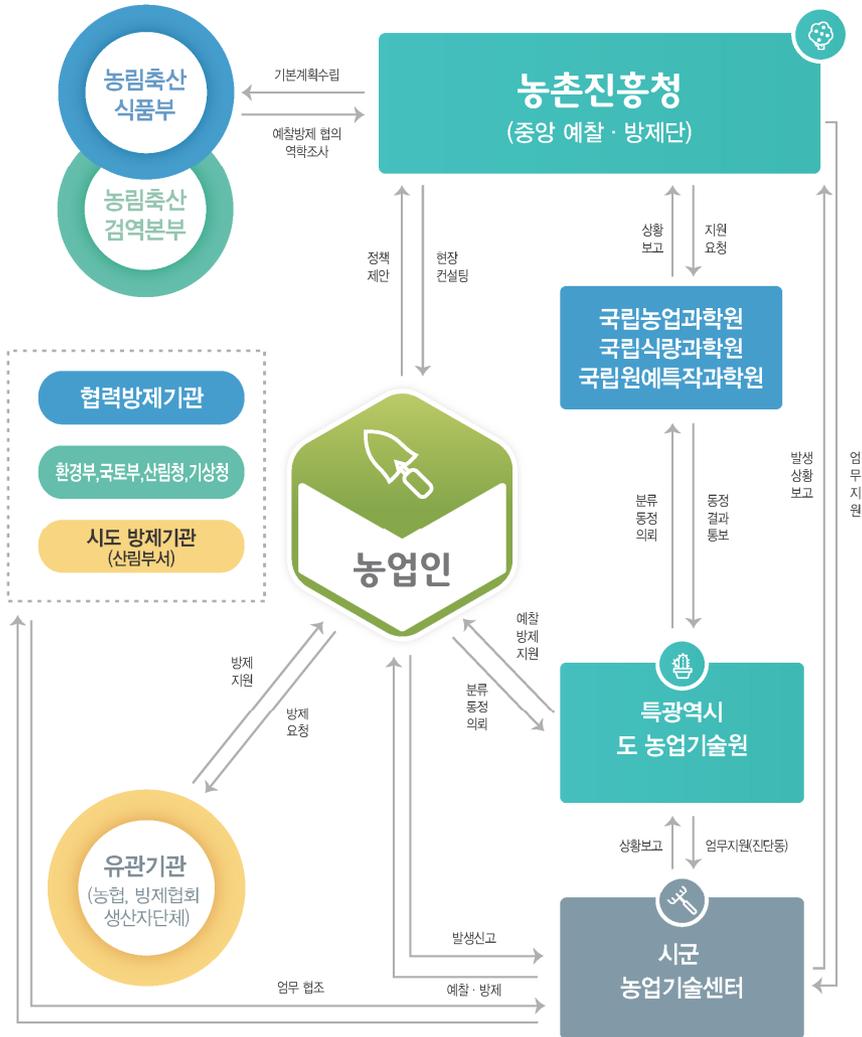
- 병해충별 발생 시기에 따른 피해상황 및 지역별 확산 정도
- 기상전망에 따른 병해충 확산 및 피해 발생 정도

#### 3) 공적방제대상(외래·검역) 병해충

- 주변국의 외래·검역병해충 발생 정보
- 금지병해충 또는 관리병해충 여부 및 위험성 정도
- 신종 병해충의 국내 유입 시 위험성 정도
- 농작물 수출입에 미칠 수 있는 피해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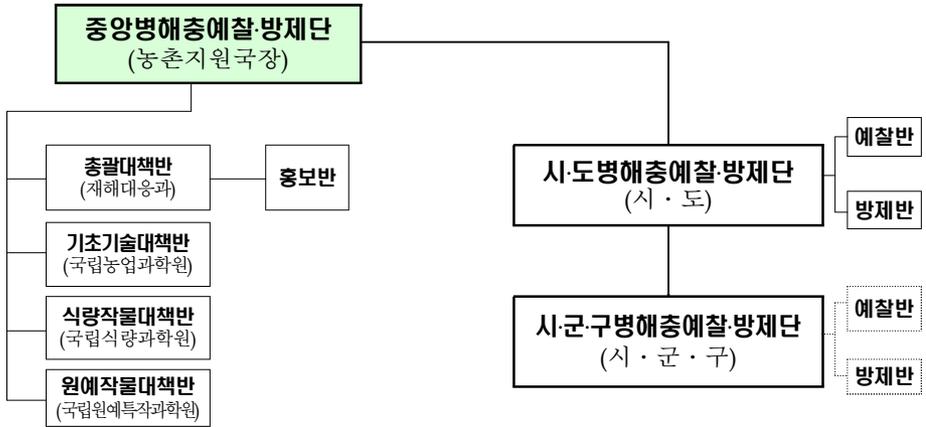
9. 위기관리 업무수행체계

가. 업무수행 체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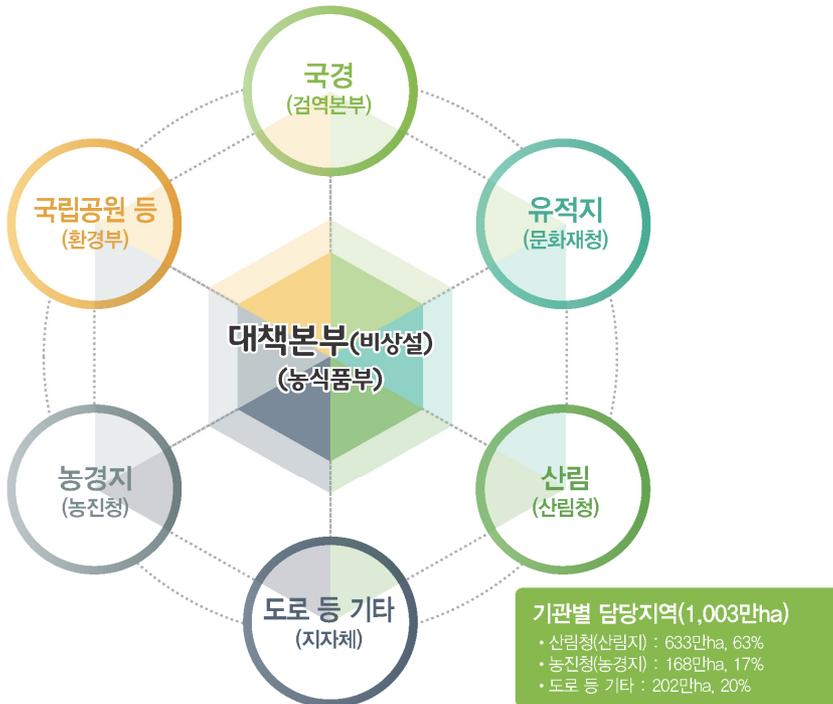


## 나. 병해충 위기관리 대응 기구(조직)

### 1) 농촌진흥청



### 2) 병해충 예찰·방제 대책본부(농림축산식품부)



### 3) 기관별 임무/역할

#### 가) 농촌진흥청

##### » 본청

- 국가적인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
-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·점검, 발생정보 확산
- 병해충 예찰·방제 사업지침 및 현장 실무매뉴얼 등 수립 활용
- 외래·검역병해충 분포조사 및 역학조사 지원
- 식물방제관 및 예찰조사원 운영 및 지원
- 시·도예찰방제단에 대한 예산기술 지원
- 지방자치단체와의 예찰·방제 협조체계 구축
- 방제비 지원, 손실보상 등에 관한 업무
- 병해충 예찰·방제 교육 과정 운영
- 그 밖에 예찰방제단장이 정한 사항

##### » 국립농업과학원

- 병해충의 분류동정, 위험평가, 정보분석, 예찰·방제 연구 및 기술개발
- 병해충 예찰·방제 기술지원 및 교육 지원
- 병해충 발생신고에 대한 처리

##### » 국립식량과학원·국립원예특작과학원

- 식량·원예작물 주요 병해충의 정보 분석, 기술개발 지원
- 병해충 예찰·방제 기술지원 및 교육 지원
- 병해충 발생신고에 대한 처리

##### » 도 농업기술원

- 해당 지역의 돌발 및 주요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
- 해당 지역의 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·점검
- 시·군·구병해충예찰방제단에 대한 예산·기술 지원
- 방제비용의 부담, 손실보상 및 생계안정비용 등에 관한 업무
- 병해충 발생신고에 대한 처리

» 시·군 농업기술센터

- 해당 지역의 병해충 예찰 시행, 방제 집행 및 보고
- 시·군·구예찰방제단의 예산 집행
- 방제 비용의 부담, 손실보상 및 생계안정비용 등의 집행
- 병해충 발생신고에 대한 처리

나) 관련 유관기관

» 농림축산식품부

- 심각단계 시 병해충 예찰·방제 대책 본부 운영
  - 병해충 예찰·방제에 관한 정책수립
  - 병해충 예찰·방제계획 수립의 총괄·조정
  - 병해충 예찰·방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
  - 중앙 및 지방 병해충 예찰·방제단의 지원
  - 병해충 예찰·방제와 관련된 대국민 홍보
- 그 밖에 장관이 정한 사항

» 농림축산검역본부

- 공항·항만 병해충 예찰조사
- 격리재배지 병해충 예찰조사
- 농산물 수출단지 내 해당 수출식물 재배지역 병해충 예찰조사
- 수입식물(수입된 날로부터 1년 이내) 재배지역 병해충 예찰조사
- 역학조사 및 검역병해충 지정여부 위험평가

» 관련기관

- 산림청 : 산림협업방제 및 분포조사
- 농협중앙회 : 농약 수급 조절, 공적 또는 공동방제 지원
- 한국작물보호협회 : 농약생산 조정 및 자재 확보
- 이외의 관련기관은 상황전개에 따라 협조 요청

## 제 2장 일반병해충 예찰·방제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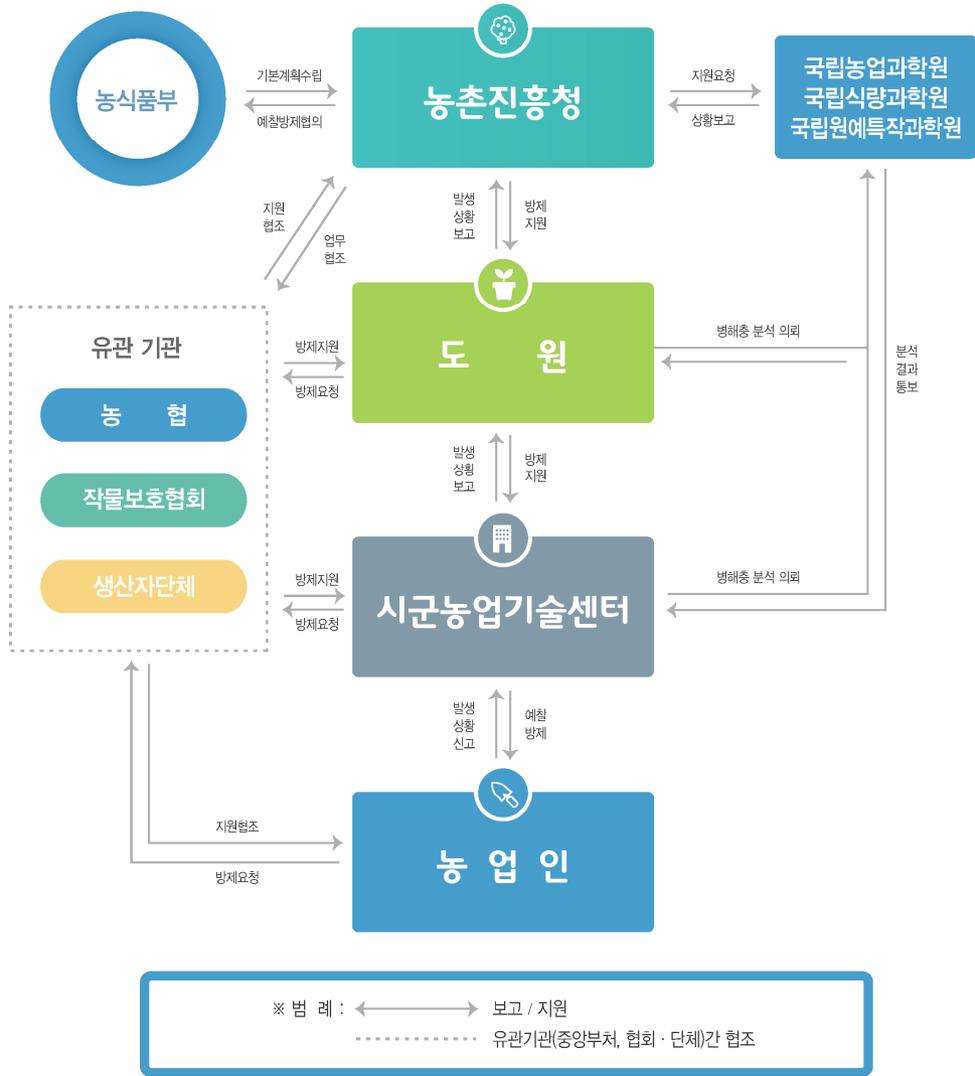


## 일반병해충 예찰·방제

### 1. 병해충 발생 단계별 수행할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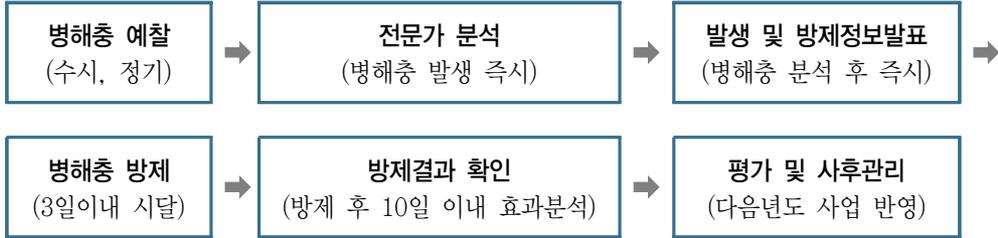
단계별	수행내용
<b>관심</b> <b>[예보]</b> (Blue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촌진흥청 관련기관으로부터 병해충 발생정보 입수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취약지역 중심으로 일부지역에서 발생 확인</li> </ul> </li> <li>○ 과거 병해충 발생한 지역 중심으로 예찰활동 강화</li> <li>○ 병해충 발생에 따른 보도자료 작성 배부</li> </ul>
<b>주의</b> <b>[주의보]</b> (Yellow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병해충 발생지역 피해현황 파악 및 관련 대책회의</li> <li>○ 병해충 취약지역 중심으로 집중 예찰·방제 기술지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병해충 생태특성 및 방제 관련 정보 제공</li> </ul> </li> <li>○ 병해충 집중 홍보로 농업인 자율적인 방제활동 지원</li> </ul>
<b>경계</b> <b>[경보]</b> (Orange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역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병해충 위주 방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피해지역 중심으로 농업인 병해충 방제 기술지원</li> </ul> </li> <li>○ 중앙(도) 현장지원단 순회 현장점검 및 기술지원</li> <li>○ 병해충 피해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책수립 추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병해충 공동방제, 유관기관과 업무협력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산림청(산림부서), 농협 등 유관기관에 방제업무 협조 요청</li> </ul>
<b>심각</b> <b>[긴급]</b> (Red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정부 정책 사업으로 긴급방제 추진</li> <li>○ 강제명령에 의한 계획적인 병해충 방제</li> <li>○ 농작물 수급조절 및 차기년도 영농을 위한 대책 수립</li> <li>○ 병해충 방제 기자재 수급동향 파악 및 조절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관기관 및 관련 기관에 업무협조와 지원 요청</li> </ul> </li> </ul>

### <병해충 예찰·방제 업무 체계도>



## 2. 일반병해충<sup>3)</sup> 종류별 조치할 사항

### 가. 병해충 단계별 추진 절차



### 나. 비래해충<sup>4)</sup>

#### 1) 해충 발생시 판단 기준

- 대상 해충 : 애멸구, 벼멸구, 흰등멸구, 흑명나방, 멸강나방 등 외국에서 기류와 함께 이동하여 피해를 주는 해충
- 공중포충망 조사 : 매일 오전 10시에 예찰포 공중포충망 내에 채집된 해충분류 기준

(벼멸구, 흰등멸구 비래 정도별 기준)

구 분		6월	7월	8월
소 비 래 (관심단계)	벼멸구	1~2마리	1~9마리	1~29마리
	흰등멸구	1~9	1~99	1~499
중 비 래 (주의단계)	벼멸구	3~9	10~29	30~99
	흰등멸구	10~99	100~499	500~999
다 비 래 (경계단계)	벼멸구	10이상	30이상	100이상
	흰등멸구	100이상	500이상	1,000이상

3) “일반병해충”이란 정기적 또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반복되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

4) “비래해충”이란 외국에서 기류를 타고 날아오는 병해충으로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병해충

- 유아등 조사 : 해가 지기 전에 전등불을 켜고, 아침에 꺼서 채집된 해충을 분류 조사

〈벼멸구, 흰등멸구 비래 정도별 기준〉

구 분		6월	7월	8월
소 비 래 (관심단계)	벼멸구	1~2마리	1~9마리	1~29마리
	흰등멸구	1~9	1~99	1~499
중 비 래 (주의단계)	벼멸구	3~9	10~29	30~99
	흰등멸구	10~99	100~499	500~999
다 비 래 (경계단계)	벼멸구	10이상	30이상	100이상
	흰등멸구	100이상	500이상	1,000이상

※ 유아등에서 콘트랩 및 페르몬 이용 조사로 전환 필요

- 포장 조사 : 포장에서 20포기를 조사하여 발견된 벼멸구 총 마리 수를 기준으로 설정

〈발생정도별 기준〉

구 분		소(관심)	중(주의)	다(경계)	심(심각)
벼멸구, 흰등멸구	초기	1~5마리	6~10마리	11~20마리	21마리이상
		(1~20)	(21~35)	(36~70)	(71이상)
	후기	1~50	51~150	151~300	301이상
		(1~170)	(171~500)	(501~1000)	(1001이상)

※ ( )는 100주 조사 경우이며, 후기는 8월 중순이후 적용

## 2) 단계별로 조치할 내용

### 가) 관심단계

#### ① 조치할 내용

- 비래해충 사전대비책 수립 제공 및 기술지원
- 연구기관, 지방농촌지도기관과 협조체계 및 대비상황 점검
- 비래해충 예찰활동 강화, 발생상황 신속 파악 및 정보 수집

#### ② 조치 절차

- 해충 사전대비책 수립 제공 및 기술지원
  - 해충 예찰·방제활동 지원 사항 사전점검 보고 (별지 1호서식, 별지 2호서식) 등
- 연구기관 및 지방농촌지도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및 사전상황 점검
  - 각 기관별로 해충 방제사업 점검 및 업무 협력
- 해충 예찰활동 강화 및 발생상황 정보 수집
  - 해충 취약지역 중심으로 예찰 및 발생상황 보고 (별지 3호서식)
  - ※ 벼멸구 중앙(도)예찰방제단 구성 및 현장조사 보고 (별지 4호서식)

#### ③ 단위 기관별 임무와 역할

- 농촌진흥청
  - 연구기관 및 지방농촌지도기관 수집한 해충 정보 수집·분석
  - 해충 방제에 필요한 기술지도 자료 제공 및 보도자료 배부
- 연구기관
  - 해충 발생 및 기상 동향 등 해충 관련 동향 보고
  - 해충 방제사업 관련정보 제공 및 유관기관과 업무 협력
- 도 농업기술원
  - 시군농업기술센터 해충 발생정보 수집 및 보고
  - 자체 병해충 예찰활동 강화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동향 수집 등
- 시군농업기술센터
  - 유아등 및 공중포충망 등 비래해충 조사
  - 농업인의 자율적인 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지도
  - 영농에 필요한 방제농기계 사전확보 및 정비교육
  - 방제약품 취급 주의사항 및 살포시기 기술지도

## 나) 주의단계

### ① 조치할 내용

- 영농기 해충 방제기간 설정 운영 및 방제대책 수립 추진
  - 영농에 필요한 방제 농기계 사전 확보 및 정비교육
  - 방제약품 살포시 주의사항(PLS 제도 등)에 대한 농업인 교육 추진
- 해충 방제관련 기술정보 제공 및 관련 정보 수집
- 해충 방제 홍보 실시 및 동향파악 수집
-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제약품 및 농자재 공급현황 파악

### ② 조치 절차

- 영농기 해충 방제기간 설정 운영 및 대책 추진
  - 조사기간 및 시기 : 협의 결과에 따라 설정 운영
  - 소속기관 및 지방농촌지도기관 조사 보고 요청
- 농업인 자율적인 비래해충 방제활동 지원
  - 농업인교육에 해충별로 방제약품 구입 시 주의사항 교육 등
  - 농기계 순회수리로 자가 정비활동 지원
- 해충 방제관련 연구동향 및 정보 제공(지방농촌진흥기관, 농업인 등)
  - 해충 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 권장 및 관련 정보 제공
- 해충 발생지역 중심으로 현장 기술지원 강화 방안 수립 실천
  - 취약지 및 해충 발생지역 대상으로 집중방제
-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제약품 및 농자재 공급현황 파악
  - 농협 및 작물보호 협회를 통한 방제약품 공급자료 수집
  - 해충 방제에 필요한 농기계 정비 및 소요 기계 대수 확보
- 해충 방제 홍보 및 지역주민들의 동향 파악 수집
  - 홍보내용 : 피해발생 해충의 생리생태와 피해형태, 방제방법 보도
  - 홍보방법 : TV 등 대중매체, SNS, 리플릿, 문자서비스 등 매체 활용

### ③ 기관별 임무와 역할

#### » 농촌진흥청

- 해충 중점 방제기간 설정 및 계획 수립 추진
- 해충 방제관련 기술정보 제공 및 정보 수집, 홍보

#### » 연구기관

- 병해충 확산 가능성 및 위험도 평가 등 분석
- 지방농촌지도기관에서 의뢰하는 각종 해충 및 바이러스 등 분석

#### » 도 농업기술원

- 비래해충 발생형태 및 발생상황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
- 농업인 자율적인 방제활동 촉구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추진
- 해충 취약지역 중심으로 예찰활동 강화 및 기술지원
- 해충 동향 파악 및 관련정보를 신속하게 유관기관에 전파

#### » 시군농업기술센터

- 발생 해충 적기 방제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 추진
- 유아등 및 공중포충망 등 비래해충 조사 결과 보고
- 대상 해충방제를 위한 홍보활동 추진
- 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 및 효율적 방제 추진
- 농업인 해충 방제교육 및 농기계 순회수리

#### » 유관기관

- 해충 방제에 필요한 약품 및 기자재 사전 확보
- 해충 발생포장 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 협력
- 방제활동에 필요한 농기계 순회수리 점검 및 소요물량 확보

## 다) 경계단계

### ① 조치할 내용

- 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방안 수립 및 실천
- 해충 피해우려지역 중심으로 현장 기술지원 강화
- 해충 발생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하게 대처

- 자율적인 해충 방제를 위한 교육, 홍보 즉시 추진
-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계와 대비상황 점검

## ② 조치 절차

- 해충 확산상황 신속한 전파 및 상급기관에 방제기술 요청
  - 해충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정보 제공 및 상황 공유
  - 해충 방제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술지원 요청(중앙, 도 등)
- 중앙(도) 해충 순회 예찰방제단 편성 현장 기술지원
  - 해충 발생상황 파악 및 현지조사를 위한 방제단 파견
  - 중앙(도) 전문가 활용 피해 중심지역 위주로 기술지원 추진
- 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대비책 수립 지시·지원
  - 해충 발생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방제지원단 활동 강화
  - 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병해충 집중방제
- 농업인 방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해충 발생 및 방제 필요성 홍보
  - 신문, TV, SNS 등 각종 매체와 현수막 등 홍보, 농업인 문자서비스 확대
- 연구기관 및 지방농촌지도기관과 업무협조 체계 점검
  - 해충 방제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유기적인 체계 유지
- 해충 발생상황 적극파악 및 정보 수집으로 신속 대처

## ③ 기관별 임무와 역할

### » 농촌진흥청

- 해충 예찰·방제 대책회의 및 기술지원단 구성 운영
- 해당 해충 대책상황실 구성 및 운영(발생 및 방제상황 모니터링)
- 해충 피해 현황 조사 및 확산 등 분석정보 제공
- 해충 방제에 필요한 농자재 및 예산 지원
- TV, 신문, SNS 등 병해충 방제 홍보 실시로 여론 형성 유도

### » 연구기관

- 지방농촌지도기관에서 의뢰하는 각종 해충 시료분석
- 효과적인 해충 방제방법 신기술 개발 및 보급

### » 도 농업기술원

- 해충 예찰방제단 대책회의 개최 및 방제작업 추진
- 해충 피해상황 보고 및 방제활동 지원 요청
- 방제활동 기술지원 및 홍보대책 수립 추진

### » 시군농업기술센터

- 시군 예찰방제단 대책회의 개최 및 지역별 방제작업 추진
- 피해지역 상황 및 주민동향 등 보고와 지원요청
- 유아등 및 공중포충망 등 비래해충 조사 결과 보고
- 해충 관련 정보의 유관기관 제공으로 공동방제 추진
-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촉진을 위한 홍보·교육 강화
- 해충 방제현장 기술지원 및 컨설팅

### » 유관기관

- 해충 방제약품 수급동향 등 관련 유통 정보 제공
- 해충 발생포장 방제 등 방제업무 협력 추진

### » 농업인

- 농작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충 방제 실천
- 시군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과 해충 방제 협의
- 해충 방제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관련정보 수집 활용
- 방제에 필요한 물품과 기자재 확보 및 구입
- 적기 해충 방제로 피해 최소화 추구

## 라) 심각단계

### ① 조치할 내용

- 농림축산식품부와 업무협의를 통한 해충 방제작업 추진
  - 정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충 방제작업
- 중앙의 해충 방제사업 계획에 현장 발생·방제 여건 등을 반영
  - 차년도 영농계획을 반영한 해충 방제계획 수립 추진
- 피해지역 중심으로 해충방제에 필요한 예산 및 자재 지원

- 방제예산과 방제약품 등 물품을 확보하여 집중지원
- 해충방제 분위기 고취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
  - TV 보도(자막방송 등), SNS 홍보, 현수막 등 활용 홍보강화

## ② 조치 절차

- 농림축산식품부와 업무협의를 통한 해충 방제작업 추진
  - 농산물 수급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우선 순위별 추진
- 중앙 방제계획에 따라 방제에 필요한 예산과 물품 지원
  - 방제계획 실천을 위하여 소요예산 및 기자재 확보 지원
- 해충 방제현장의 여건에 따라 적절한 전문가 파견 지원
  - 연구기관의 관련전문가 위주로 기술지원단 구성 파견
- 지방 지도기관과 협력하여 대상 해충정보 및 방제기술 홍보
  - 피해지역 중심 TV 자막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
- 피해지역 중심의 집중적인 방제활동 전개로 확산 차단 주력
  - 관련 예산과 물품의 집중 배분으로 조기 차단
  - 지방 지도기관의 병해충 예찰방제단 이용 방제활동 독려

## ③ 기관별 임무와 역할

### » 농림축산식품부

- 해충 발생 및 방제상황 모니터링 및 관련 정책 수립 지원
- 대상 해충 방제계획 수립 및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
- 해충 방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구성 운영
- 해충 방제를 위한 농기계·농자재 확보 지원
- 해충 관련기관의 방제활동 역할 및 지원 협의

### » 농촌진흥청

- 대상 해충 대책상황실 강화(모니터링, 예산·물품 지원, 기술지원 등)
- 대상 해충 방제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 물품 확보 지원
- 전문가 위주 기술지원단 구성하여 피해지역 중심 기술지원
- TV, 신문, SNS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로 공감대 형성 유도

### » 지방 농촌지도기관(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)

- 해충 방제효과 제고를 위한 동시방제 또는 공동방제
- 지방 자치단체(도, 시군청)와 협력하여 방제현장 기술지원
- 해충 피해 조사 보고 및 증양의 방제예산과 기술지원 요청
- 해충확산 차단 위주의 방제활동으로 피해 최소화 추구
- 대중매체 홍보 등으로 방제활동 공감대 형성 강화
- 농기계은행 등에서 보유한 농기계 지원 및 방제활동 독려

### » 유관기관

- 작물보호협회 : 해충 방제 농자재 수급 및 유통
- 농협 : 해충 방제 농자재 수급에 따른 지원방안 실천

### » 농업인

- 대상 해충 방제에 필요한 약품 및 농자재 구입 살포
- 시군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과 병해충 방제활동 협의 추진
- 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포장관리 철저
- 해충 방제활동에 필요한 농기계 및 약제 등 관리 철저
- 수시로 해충 관련정보 홈페이지 확인 및 조기 방제 실천
- 주기적인 포장 예찰로 안전농작물 생산 유통

## 다. 중점 방제대상 병해충<sup>5)</sup>

### 1) 병해충 발생시 판단기준

#### 가) 대상 병해충

- 벼 도열병, 잎집무늬마름병, 이화명나방, 고추 탄저병, 고추 담배나방, 역병, 배추 무름병 등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인정한 병해충 중에서 ‘병해충 예찰·방제요강’에 따라 관찰포를 설치하고 조사하는 병해충

#### 나) 조사내용 및 위험단계 설정 기준

병해충별	조사 내용	발생 정도별 기준			
		소(관심)	중(주의)	다(경계)	심(심각)
잎도열병	병무늬면적률	0.2이하	0.21~0.5	0.51~2.0	2.0이상
이삭도열병	병든 이삭률	1~5	6~10	11~20	21이상
잎집무늬마름병	병든 줄기율	1~5	6~15	16~30	31이상
이화명나방	피해 줄기율	1~5	6~10	11~20	21이상
멸강나방	피해 잎 율	1~5	6~10	11~20	21이상
애멸구	마리수/20포기	1~2	3~5	6~10	11이상
고추 탄저병	피해 과실률	0.1~1	2~10	11~30	31이상
고추 역병	병든 포기율	0.1~1	1.01~2.0	2.01~5.0	5.0이상
고추 담배나방	피해 과실률	0.1~1	2~10	11~30	31이상
배추 무름병	병든 포기율	0.1~1	2~10	11~30	31이상

5) “중점 방제대상 병해충” 이란 농경지나 산림에서 발생시 방제를 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병해충

## 2) 단계별로 조치할 내용

### 가) 관심단계

#### ① 조치할 내용

- 병해충 예찰활동 강화, 발생상황 신속 파악과 정보수집
-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한 방제 대책 수립

#### ② 조치 절차

- 벼 병해충 발생상황, 병해충 피해 상황 보고(별지 1호서식, 별지 2호서식)
- 병해충방제 사전대책 수립 및 관련 정보 수집
- 유관기관과 업무협력 및 병해충 방제 농자재 유통현황 파악
  - 방제약품수급 동향 및 방제 농기계 사전 확보
- 벼 병해충 예찰결과, 벼멸구 중점방제 운영 결과 보고

(별지 3호서식, 별지 4호서식)

#### ③ 단위기관별 임무와 역할

##### » 농촌진흥청

- 연구기관, 농촌지도기관에서 수집한 병해충 정보 분석
- 중점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발생정보 제공
- 병해충 방제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력

##### » 연구기관

- 병해충 발생, 생리·생태 및 기상 동향 등 병해충 관련 정보 제공
-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관련 정보 및 기술지원

##### » 도 농업기술원

- 시군농업기술센터 병해충 발생정보 수집 및 보고
- 병해충 방제 정보 및 기술정보 등을 관련기관에 전파

##### » 시군농업기술센터

- 자율적인 병해충 예찰활동 강화 및 방제 기술지원

- 방제약품 살포시기, 대상작목 등에 관한 농업인 교육 추진
- 병해충 상습 발생지역 기술지원 및 예찰 강화

### » 유관기관

- 병해충 방제약품 및 농자재 수급동향 파악 협조
- 병해충 방제 농기계 사전 확보 및 기술지원 협력

## 나) 주의단계

### ① 조치할 내용

- 병해충 발생 취약지역 중점 방제기간 설정 운영
- 병해충 발생에 따른 방제기술 제공 및 대책 수립 추진
-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제활동 현장 지원
- 연구기관과 농촌지도기관 협조 및 방제활동 기술지원
- 자율적인 방제활동 지원을 위한 기술지원 및 홍보

### ② 조치 절차

- 영농기 병해충 중점 예찰방제기간 설정 운영
  - 병해충별로 조사기간 및 시기 등을 중점 홍보
  - 소속기관 및 지방농촌지도기관 조사 보고 요청
- 연구기관과 농촌지도기관 협조 및 방제활동 기술지원
  - 각 기관별로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시 필요한 정보 제공
- 병해충 발생에 따른 방제 관련 기술 제공 및 대책 추진
  - 병해충 발생에 따른 피해예방과 방제기술 제공
- 발생지역 중심으로 예찰방제활동 강화 및 기술지원
  - 취약지, 발생 우려지역 중심 방제활동 전개 및 상황 점검
- 병해충 발생 동향파악으로 사전 대처방법 기술보급
  - 피해발생 병해충의 생리생태와 피해형태 분석 및 대처
  - 병해충 방제활동에서 발굴된 애로사항 수집, 문제점 해결

### ③ 기관별 임무와 역할

#### » 농촌진흥청

- 병해충 종류별로 예찰·방제 기간 설정 운영
- 병해충 발생 수준에 알맞은 병해충 방제정보 제공 및 분석

#### » 연구기관

- 병해충 생태정보 및 효과적인 방제 관련 정보 제공
- 기관에서 의뢰하는 각종 병해충 시료분석 신속한 결과통보

#### » 도 농업기술원

- 병해충 발생형태 및 피해상황 등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
- 병해충 동향 파악 및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에 전파

#### » 시군농업기술센터

- 대상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현장 예찰
- 피해 우려지역 중심으로 병해충 방제활동 기술지원

#### » 유관기관

- 병해충 방제약품 및 농자재 수급동향 파악 협조
- 병해충 발생포장 방제작업 및 방제 관련업무 협조

## 다) 경계단계

### ① 조치할 내용

- 병해충 예찰·방제 대책회의 신속한 개최로 방제활동 실천
- 중앙 병해충 순회 방제단 편성 운영 및 기술지원
- 병해충 피해 파악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
- 자율적인 방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농업인 병해충교육

## ② 조치 절차

- 중앙 병해충 순회 기술지원단 편성 운영 및 현장지원
  - 병해충 발생상황 현지조사 및 기술지원단 기술보급
- 병해충 확산 상황 신속한 전파 및 방제 지원
  - 병해충 확산 전파에 따른 방제기술과 정보 제공
  - 병해충 방제활동에 필요한 각종 물품 및 예산 확보
-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제작업 추진
  - 병해충 피해 주변지역에서 중심지역으로 방제활동 전개
  - 인근지역으로 병해충 확산을 차단하는 방제활동 추진
- 병해충 자율적인 방제와 인근 확산 방지를 위한 병해충 홍보
  - 신문, TV 등 각종 매체와 현수막 등 홍보
- 연구기관 및 농촌지도기관과 병해충 방제 업무협력 추진
  - 병해충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유기적인 활동 전개
  - 상호 병해충 공동방제 업무 협력으로 방제효과 제고

## ③ 기관별 임무와 역할

### » 농촌진흥청

- 병해충 예찰방제 대책회의 개최 및 방제정보 발표
- 농촌지도기관에서 희망하는 병해충 방제기술 및 정보제공
- 병해충 피해 분석 및 확산예측에 의한 방제활동 지원

### » 연구기관

- 병해충 관련 정보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방제방법 개선 등
- 병해충 확산 가능성 및 위험도 평가분석 정보 제공
- 병해충 방제 전문 인력 지원에 의한 현장 컨설팅

### » 도 농업기술원

- 병해충 예찰방제단 대책회의 개최로 방제작업 실천
- 병해충 피해지역 중심 기술지원으로 피해 최소화 및 확산 차단
- 지방자치단체 확보 예산을 활용한 방제활동 지원
- 농업인들의 방제활동 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

### » 시군농업기술센터

- 피해지역 중심으로 집중방제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
- 농업인들의 방제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송 등 홍보
- 농업인 방제현장 기술지원과 보급으로 방제효과 제고
- 병해충 예찰에 의한 방제활동지원으로 적기 방제
- 병해충 예찰방제단 중심으로 방제활동 지원

### » 유관기관

-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방제약제와 기자재 등 확보방안 강구
- 병해충 발생포장 방제작업 및 방제지원단 구성 운영

### » 농업인

- 병해충 방제약품을 살포시기 및 횟수를 준수하여 방제
- 대상 병해충 방제는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협의하여 전개
- 방제 농기계 안전운행 및 방제약제 취급시 주의사항 준수
- 방제작업 후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건강관리에 유의

## 라) 심각단계

### ① 조치할 내용

- 농림축산식품부와 업무 협의를 통한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
- 중앙 방제계획에 따라 병해충 방제사업 활동 전개
- 병해충 방제예산 및 약제 등 필요한 기자재 확보 지원
- 피해지역 지도기관 중심으로 방제예산 및 약제 등 지원
- 방제효과 제고를 위한 동시방제 또는 공동방제
- 방제활동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농민 홍보 등

### ② 조치 절차

-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제 가능하도록 행정조치
  - 국민 식량 확보 차원에서 정책으로 추진하는 단계임

- 중앙 방제계획에 의한 병해충 방제활동 전개
  - 중앙의 병해충 방제 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추진
- 중앙 기술지원단 전문인력 현장지원으로 방제의식 고취
  - 영농현장에서 필요한 방제기술 지원 및 컨설팅
- 방제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약제 등 필요 물품 확보 지원
  -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방제활동에 필요 사항 점검 및 지원
- 방제활동 공감대 형성 및 유지를 위한 홍보 지원
  - TV, 지방 유성방송, 현수막 등 홍보활동 지원

### ③ 기관별 임무와 역할

#### » 농림축산식품부

- 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정책적인 사항 지원

#### » 농촌진흥청

- 대상병해충 방제 기술 및 관련 정보 제공
- 병해충방제 기술지원단 전문가 지원으로 병해충 확산 차단
- 방제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물품 확보 지원
- TV, 신문 등을 이용 홍보 실시로 병해충 방제 분위기 유도

#### » 지방 농촌지도기관(도원 및 시군센터)

- 대상 병해충 확산 조사 및 보고와 차단을 위한 방제
- 방제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관련 중앙에 지원 요청
- 농가보유 농기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순회수리
- 피해지역 중심으로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
-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병해충 동시 방제활동 전개
-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방제 기술보급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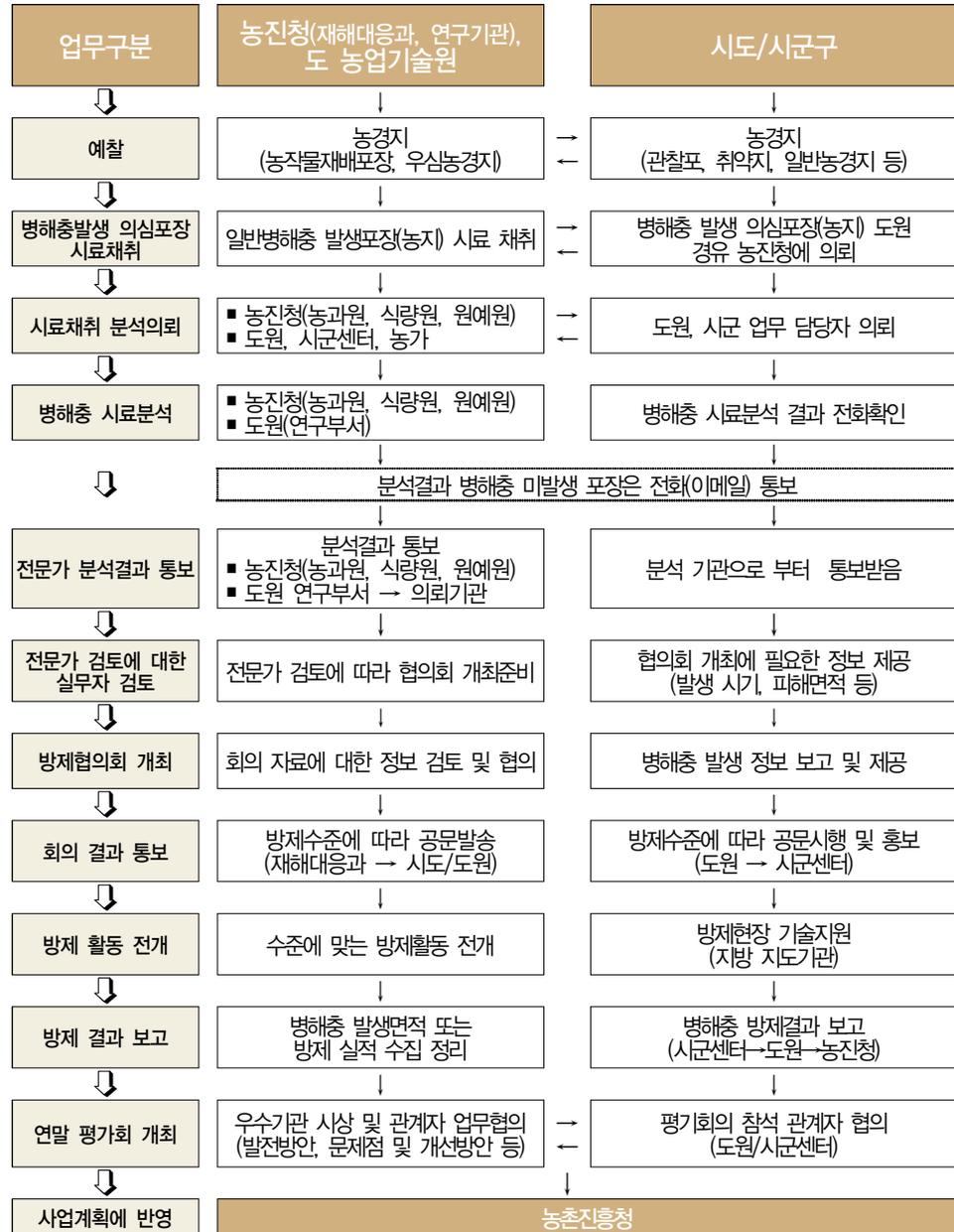
#### » 유관기관

- 병해충 발생포장 방제활동 협력 및 방제단 운영 협조
- 기관별로 보유한 방제기계 지원 및 전문기술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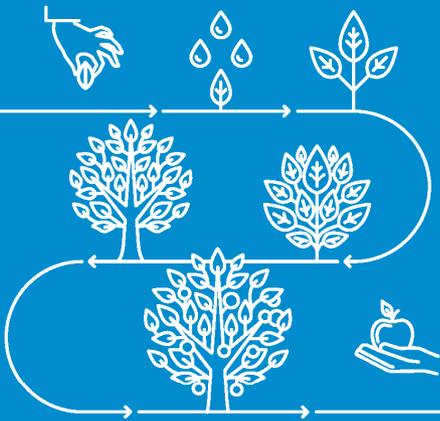
**» 농업인**

- 수시 예찰에 의한 적기 방제로 피해 최소화
- 병해충 방제는 효과 제고를 위해 동시방제 또는 공동방제
- 병해충 방제 농기계 및 약제 등 관리 철저
- 농작물 포장관리 철저로 안전농산물 생산

참고 | 일반병해충 업무 체계도



제 3장  
돌발병해충  
예찰·방제







## 돌발병해충 예찰·방제



### 1. 돌발병해충<sup>6)</sup> 발생 단계별 수행할 내용

항 목	내 용	일 정
월동 난 제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피해가지 전정 (시행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행)</li> </ul>	1월~2월 하순
↓	↓	
월동 난 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농진청(농경지 및 주변), 산림청(산림지역), 지자체와 합동 조사</li> </ul>	3월 5일~23일 (2월 25일 공문시행)
↓	↓	
방제시기 예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알 부화에 영향을 주는 온도(발육영점온도)를 누적하여 지역별 부화시기 예측</li> <li>* 농과원 작물보호과 협조</li> </ul>	4월 18일
↓	↓	
방제대책협의회 (관계기관 협의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월동난 조사 결과에 따른 방제구역 설정 및 공동방제 협의 등</li> <li>* 농식품부, 농진청, 산림청, 지자체 등 관계부처 참여</li> </ul>	4월 25일
↓	↓	
1차 협업방제 (약충 방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알이 80% 부화한 시기(약충)에 집중 방제 (농경지와 산림 동시방제)</li> </ul>	5월 ~ 6월
↓	↓	
성충 조사 (방제효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돌발해충 성충 밀도 전국 조사</li> </ul>	7월 상순
↓	↓	
2차 협업방제 (산란 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성충 밀도가 높은 지역 산란 전 공동방제 실시</li> </ul>	8월~9월
↓	↓	
방제효과 조사 (산란밀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내년도 돌발해충 방제계획 수립 참고</li> </ul>	11월 중순

6) “돌발해충” 이란 기후변화,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로 인하여 돌발적으로 발생되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외래 병해충

## 2. 대상 병해충

### 1) 대상해충

- 꽃매미, 갈색날개매미충,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국지적으로 피해를 주는 병해충

## 3. 돌발병해충 발생 단계별 조치할 내용

### 1) 관심단계

#### ① 조치할 내용

- 기상, 병해충 예측정보 등 모니터링
- 돌발해충 발생상황 조사 및 병해충 예찰·방제계획 수립
-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및 대비상황 점검
- 돌발해충 발생 시 실무자회의 개최

#### ② 조치 절차

- 모니터링
  - 기상, 병해충 발생상황 신속 파악 및 정보 수집
  - 연구기관 및 지방농촌지도기관 수집한 병해충 정보 분석
    - \* 돌발해충 발생정보 및 적기방제 정보제공
- 해충 발생상황(일동난, 부화율 등) 조사
  - 지방농촌지도기관에서 농경지 주변 예찰 결과 보고
- 돌발해충 예찰·방제계획 수립 추진
  - 예찰 조사결과 분석, 예찰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 정보제공
-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및 대비상황 점검
  - 연구기관에서 병해충 방제약제 개발 및 농약등록 지원 등
  - 도 농업기술원은 관할 지역의 월동 난 제거 계획수립 추진

- 시군센터는 병해충 발생조사 결과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(NCPMS)에 입력 및 유선 보고
  - \* 병해충 방제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발생정보 발표와 홍보
- 돌발해충 발생 시에 실무자회의 개최
  - 해충 발생수준에 따라 대책 수립 및 방제

### ③ 기관별 임무와 역할

#### » 농촌진흥청

- 소속기관 및 지방농촌지도기관 수집한 해충 정보 분석
- 해충 방제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방제발표와 홍보
- 외래·돌발해충 예찰결과 조사 결과보고(별지 5, 6호 서식)

#### » 연구기관

- 해충 발생 동향 보고 및 생태정보 제공
- 해충 발생지역 방제 현장 기술지원 등

#### » 도 농업기술원

- 시군농업기술센터 해충 발생정보 수집 및 보고
- 해충 보도자료 배부 및 홍보
- 자체 해충 방제 추진대책 수립

#### » 시군농업기술센터

- 해충 방제 추진 및 기술지도
- 농업인 대상 해충 방제교육 추진

#### » 유관기관

- 농림축산검역본부 : 공동예찰방제 및 외래해충 정보공유
- 산림청 : 농경지 주변 산림해충 예찰 및 항공방제 지원
- 농협, 작물보호협회 등 : 방제약제 및 농자재 수급정보 지원

## 2) 주의단계

### ① 조치할 내용

- 돌발해충 발생상황 모니터링 및 상황 전파
- 해충 ‘주의’ 단계 발표에 따른 대책 추진
- 연구기관과 지방농촌지도기관의 대처상황 확인
- 피해 우려지역 예찰강화 지시 및 현장 기술지원 강화

### ② 조치 절차

- 돌발해충 발생상황 모니터링 및 상황 전파
  - 기상 등 분석으로 지역별 발생예측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
  - ‘주의’ 단계 발표와 동시에 관련기관 및 부서에 상황 전파
- 해충 ‘주의’ 단계 발표에 따른 대책 추진
  - 해충 밀도 등을 판단하고 향후 대응수준 결정
  - 상황 판단에 따라 각 기관별/부서별 임무 및 역할 부여
  - 과거의 해충 발생상황 등을 분석하여 대책 수립
  - 각 부서별 및 유관기관 회의 개최
    - 해충 발생에 따른 해당 지역별 대응대책 수립 실천
  - 해충 발생지역에 파견할 해충대책상황 초동대응반 및 중앙합동지원단 구성 인력 파견 준비
    - 해충 발생지역의 기술지원 및 발생원인 조사 분석을 위한 중앙합동 지원단 구성 인력 파견 준비
- 연구기관과 지방농촌지도기관의 대처상황 확인
  -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긴급방제 요청 등 독려
  - 병해충 피해상황 보고 의뢰 및 정보 수집
    - 연구기관 방제 기술지원 사항 확인
    -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방제대책 추진상황 확인
- 피해 우려지역 예찰강화 지시 및 현장 기술지원 강화
  - 주산단지 중심 예찰방제 등 해충 확산 방지 기술지원

### ③ 기관별 임무와 역할

#### » 농촌진흥청

- 효율적인 해충 방제를 위한 계획 수립 추진
- NCPMS, SNS 등 ON-LINE을 통한 대응 메시지 발송
- 방송 및 신문, SNS 활용 농작물관리요령 등 홍보
- 해충 순회 예찰단 편성 현장 조사 및 컨설팅

#### » 연구기관

- 해충 생태정보 및 효과적인 방제 관련 정보 제공
- 해충 확산가능성 및 위험도 평가 등 분석

#### » 도 농업기술원

- 해충 발생동향 및 피해상황 농진청에 보고(수시)(별지 6호서식)
- 해충 보도자료 배부 및 홍보

#### » 시군농업기술센터

- 해충 예찰·방제단 회의 개최 및 방제 실천
- 대상 해충 방제를 위한 농업인 홍보 및 지원 활동
- 해충 순회조사 및 피해 동향 등을 보고(수시)
- 해충 발생 농가 긴급방제 및 기술 지원 추진

#### » 유관기관

- 농림축산식품부 : 공동예찰방제 및 돌발해충 정보공유
- 산림청 : 산림해충 예찰 및 광역·항공방제 지원
- 농협·작물보호협회 : 방제약제 및 농자재 수급동향 파악

### 3) 경계단계

#### ① 조치할 내용

- 돌발해충 발생상황 모니터링 및 전파
- 해충 '경계' 단계 발표에 따른 대책 추진
- 연구기관 및 지방농촌지도기관과 대처상황 확인
- 피해지역 긴급방제 요청 및 현장 기술지원 강화

#### ② 조치 절차

- 돌발해충 발생상황 모니터링 및 전파
  - 기상분석으로 지역별 발생예측 및 지속적으로 모니터링
- '경계' 단계 발표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(별지 7호서식)
  - 병해충 진행상황 및 전파지역 등을 분석
  - 병해충 진행상황 보고 및 전파
    - 진행상황 보고 : 지역별 병해충 발생상황 보고
    - 관련 지역 병해충 상황, 방제요령 전파
- 연구기관 및 지방농촌지도기관의 대처상황 확인
  - '경계' 단계 해충 발생에 따른 대응 조치상황 확인
  - 연구기관 소관사항 이행 요청 및 실행 확인
    - 기관별 이행계획 수립 여부 등
- 피해지역 긴급방제 요청 및 현장 기술지원 강화
  - 주산단지 중심 긴급방제 등 해충 확산 방지대책 추진

#### ③ 기관별 임무와 역할

##### » 농촌진흥청

- 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중앙 기술지원단 긴급파견 추진
- 관계기관과 농업인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
- 해충 방제에 필요한 농자재 및 긴급예산 지원 추진

### » 연구기관

- 지방농촌지도기관에서 의뢰하는 해충 시료분석 통보
- 효과적인 해충 방제방법 신기술 개발 및 발굴
- 지방농촌지도기관에서 요구하는 전문가 기술지원 등
- 자체적으로 예찰한 해충 분석자료 관계 기관에 통보

### » 도 농업기술원

- 해충 발생동향 및 피해상황 농촌진흥청에 보고
  - 해충 예찰결과 조사보고(별지 5호서식)
- 농업인 병해충 방제 촉구를 위한 홍보 지속 추진
- 피해 우려지역 공동방제 및 해충 기술지원
  - 해충이 많이 발생한 지역 중심으로 예찰
  - 취약지 등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예찰활동 강화
  -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은 특별관리 토록 조치

### » 시군농업기술센터

- 대상 해충 방제를 위한 농업인 홍보 및 지원 활동
- 해충 순회조사 및 피해 동향 등을 상급기관에 보고
- 대상농가 방제효과 증진을 위하여 공동방제 적극 유도
- 농업인 활용 방제 농기계 긴급순회수리
- 영농현장 기술지원 및 방제 활동 지속 추진

### » 유관기관

- 농림축산식품부 : 공동예찰방제 및 돌발해충 정보공유
- 산림청 : 산림해충 예찰 및 광역·항공방제 지원

### » 농업인

- 해충 방제약제 살포시기 및 사용횟수 등 안전수칙 준수
- 대상 해충 방제는 농촌지도기관 관계자와 협의 후
- 방제농기계 안전운행 및 약제 취급관리 주의
- 해충 방제작업 후 세척 등으로 위생관리 철저

## 4) 심각단계

### ① 조치할 내용

- 돌발해충 발생상황 모니터링 및 전파
- 해충 '심각' 단계 발표에 따른 대책 추진
- 농림축산식품부와 업무협의를 통한 해충 방제사업 추진
- 중앙 방제계획에 따라 해충 방제

### ② 조치 절차

- 돌발해충 발생상황 모니터링 및 전파
  - 연구기관 및 지방농촌지도기관 등 관련기관에 신속 전파
- 해충 '심각' 단계 발표에 따른 대책 추진
  - 해충 발생 피해상황 보고(별지 7호서식) 및 진행상황 등 분석
  - 지방농촌진흥기관별로 등록된 정보를 통해 피해상황 파악
  - 해충 발생지역에 대한 기록을 전산화하여 저장
- 농림축산식품부와 업무협의를 통한 해충 방제사업 추진
  - 국가 식량 확보 차원으로 정부의 정책에 의한 단계적 추진
- 정부의 중앙 방제계획에 따라 해충 방제활동 전개
  - 중앙의 해충 방제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실시

### ③ 기관별 임무와 역할

#### » 농림축산식품부

- 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정책적인 사항 지원
-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 추진

#### » 농촌진흥청

- 대상 해충 방제기술 및 관련 정보 제공
- 해충 방제지원단 운영으로 해충 확산 차단

### » 지방농촌지도기관(도원 및 시군센터)

- 중앙 매뉴얼에 따른 해충 방제활동 기술지원
- 자체적인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유관기관 협력 추진
- 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제현장 기술보급

### » 유관기관

- 해충 피해포장 피해복구 협력 및 방제단 운영 협조
- 자체 보유한 방제농기계 및 요청사항 지원
- 방제효과 제고를 위하여 동시방제 또는 공동방제

### » 농업인

- 과수, 화목류 등에 발생된 돌발해충 방제
- 방제활동 후 사용농기계 및 약제 등 관리 철저
- 방제작업 후 위생관리 철저로 안전사고 미연 방지



## 4. 사후관리 및 금후 대처방안 강구

### 가. 사후관리

#### 1) 중앙단위

- 효율적인 돌발해충 방제사업을 평가하여 문제점 발굴
  - 방제효과 확인 및 현장 애로사항 의견 수렴
  - 돌발해충 피해현황에 따라 적절한 예산확보 및 지원
  - 방제활동 시 발생한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
- 해충 방제활동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과제 발굴 지원
  -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방제활동 모색
- 돌발해충 방제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자들과 업무 협력
  - 각종 평가회 및 연찬회 실시로 상호 인적·물적 교류 촉진
- 돌발해충 방제활동 우수기관, 우수공무원 시상으로 관계자 격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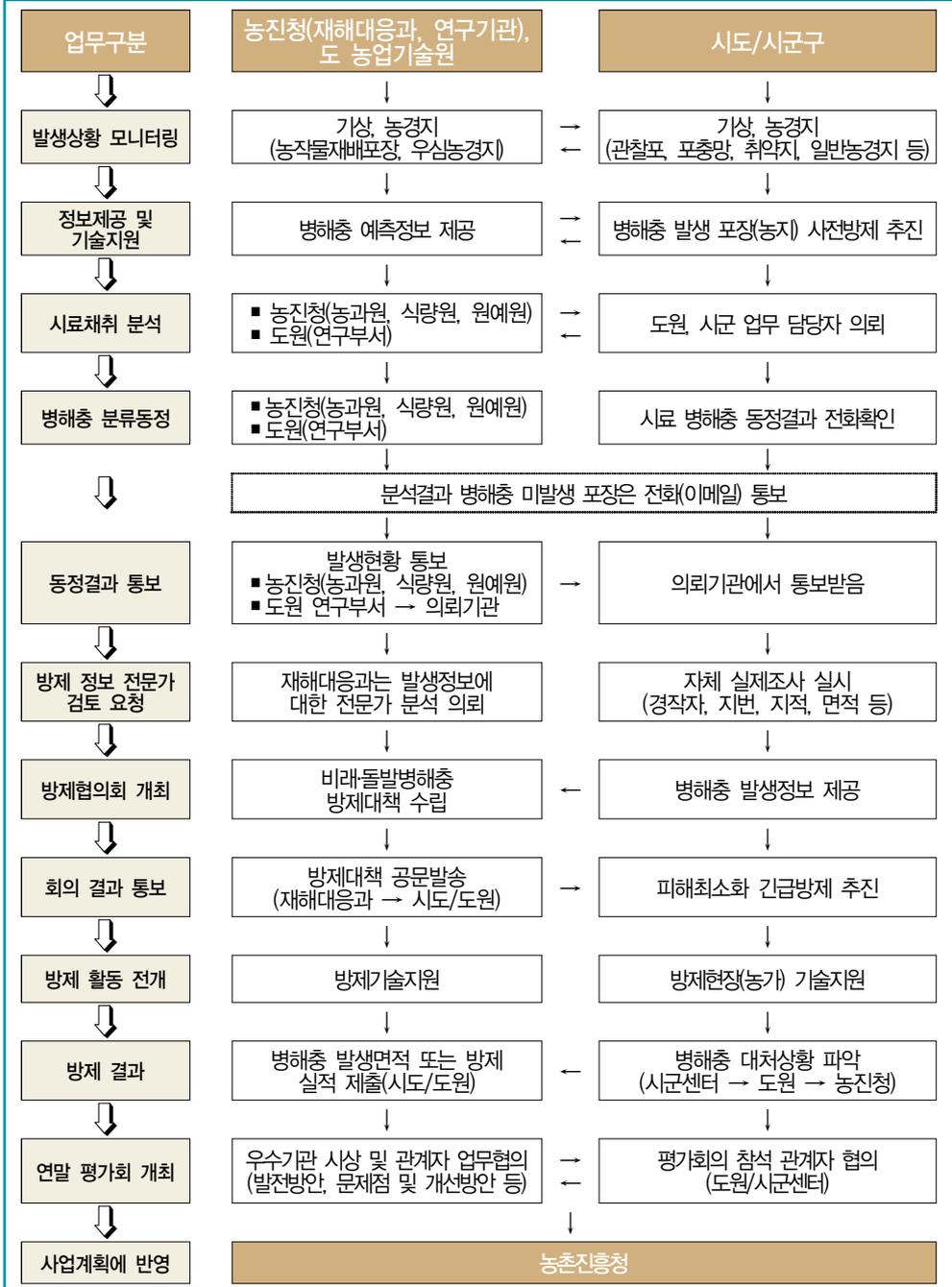
## 2) 지방단위

- 돌발해충 발생상황 분석 및 방제방법 등 금후 추진계획에 반영
  - 돌발해충 발생 시 교육 등으로 상황 대처
  - 차년도 농업인 영농계획에 반영 농작물 피해 최소화
- 해충 발생지역에 대한 기상 및 여건을 분석 등 자료 축적
  - 돌발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지도 자료로 이용
- 돌발해충 취약지역 집중 예찰·방제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
  - 돌발해충 발생 자료 D/B화 및 차년도 예찰방제사업에 반영

### 나. 금후 대처방안

-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배부
  - 해충 피해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제활동 지원
- 해충 방제활동 및 기술지원
  - 해충 방제활동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
  - 시책건의, 연구과제 설정, 유관기관 협의 추진 등
- 종합평가에 의한 피해 대처능력 배양
  -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차년도 발전방안 강구
  - 영농현장의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도출 등
- 해충 우심지역 관리대책 수립 및 우수사례 발굴, 확산
- 위기대응체계 보완 및 주요 해충 발생지역 예찰 강화
- 해충 발생포장에 대한 경종적 대책 방안 마련 추진

참고 1 | 비래·돌발병해충 업무 체계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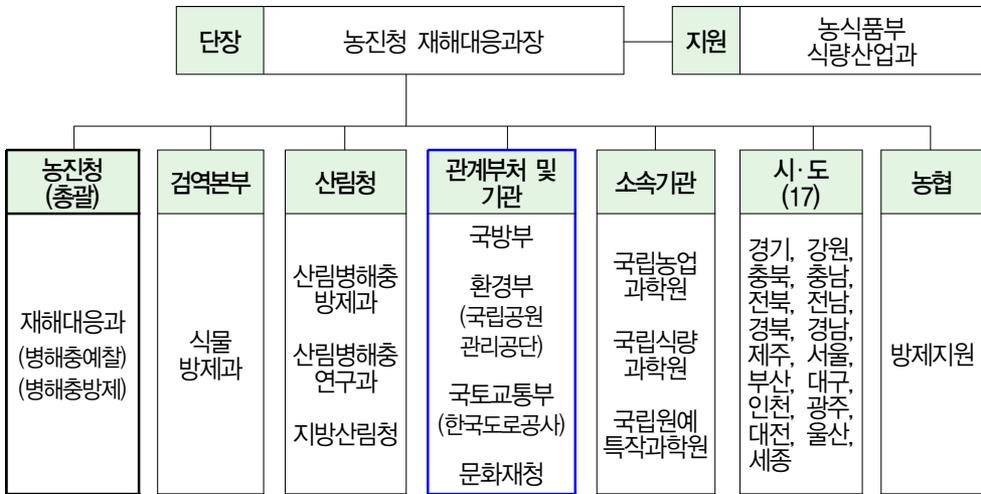
참고 2 | 돌발병해충 “방제대책 협의체” 구성 및 운영

## 돌발병해충 “방제대책 협의체” 구성 및 운영

□ 목 적

-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병해충 협업방제를 위한 기관 간 역할분담
- 기후변화·개방화로 돌발병해충 다 발생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

□ 구 성(농진청, 산림청, 농과원, 식량원, 원예원, 지자체, 농식품부, 검역본부)



□ 임 무

- (농식품부, 검역본부) 식물방역법 및 하위법령 개정, 돌발병해충 추진지원
- (농진청) 협의회 운영, 농경지 돌발병해충 예찰·방제 체계구축 및 공동방제 정보 공유, 연구사업, 농진청 고시 개정 등
- (산림청) 산림지 돌발병해충 예찰 및 협력방제 추진
- (지자체) 돌발병해충 예찰 및 농진청·지자체 방제비 활용 적기방제
- (관계부처 및 기관) 관할구역 돌발병해충 예찰 및 협업방제

□ 운 영

- 추진사항 점검 및 긴급사안 발생 등 필요 시 회의 개최(수시)
- 돌발병해충 발생 및 방제방법 도출, 연구사업 추진 등 협의(수시)

## 참고 3 | 돌발병해충 “공동방제의 날” 운영

## 돌발병해충 “공동방제의 날” 운영

## 기본방향

- ❖ 농진청, 산림청,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지역별 ‘공동 방제의 날’ 설정·운영
- ❖ 농경·산림지 적기 동시 실시로 방제효과 극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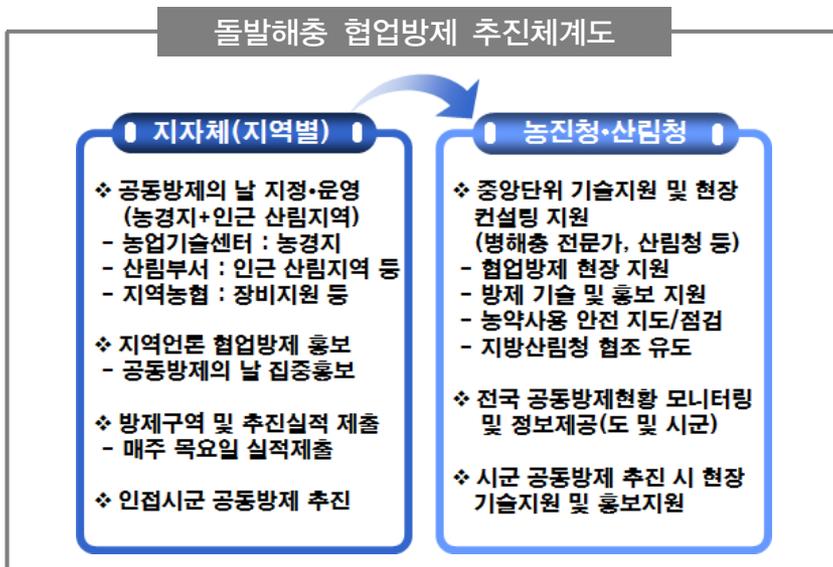
## □ 지역별 ‘공동방제의 날’ 지정 운영

- (중앙) 전국 농림지 동시발생 공동방제 추진을 위해 부처, 기관 간 협업 도모 및 현장컨설팅 지원
  - 중앙단위 공동방제 기술지원 및 현장컨설팅 추진
    - \* 기술지원팀 구성 : 농진청 재해대응과, 농과원 작물보호과, 산림청 등 3~5명
- (시도) 시도단위 ‘공동방제 기간’을 지정하고 시군단위 방제지원 및 협업방제 추진
- (시군) 지역별 ‘공동방제의 날’을 지정하여 협업방제 추진
  - \* 시군 산림부서, 농협 등과 공동방제의 날 및 방제구역 설정
  - \* 공동방제의 날에 맞춰 도-시군 협력행사 또는 인접 시군 공동방제 추진

## □ 유관(관계)기관 간 협업

- (농촌진흥청)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 예찰·방제 총괄
  - 농림지 방제관련 예산 및 예찰·방제 기술지원, 체계적 홍보 추진
- (산림청) 산림지역 돌발해충 예찰·방제 총괄
  - 산림지 등 예찰·방제 관련 예산 및 장비, 기술지원 등
  - (지방산림청) 관할지역 도·시·군 산림지 돌발해충 방제지원

- (시·군·구) 돌발해충 방제대책 협의회 구성 및 협업방제 계획 수립·시행
  - 돌발해충 방제구역 설정 및 방제기간, 방제방법 결정·추진
  - \* 지역별 '공동방제의 날' 지정 운영으로 방제효율 극대화
- (관계부처) 관할구역 중점방제기간 돌발해충 협업방제 추진
  - 관련지역 담당기관에 정보공유 및 지자체와 협업방제 협조 요청
  - \* (지자체 산림부서) 농경지 인접 산림지역 협업방제 참여, 장비·인력 지원
  - \* (지역농협) 지자체 방제장비 지원, 협업방제 참여



□ 홍보 추진

- 도 및 시군별 공동방제의 날 지정 및 협업방제 언론보도 추진(시군별, 지역 언론 대상)

제 4 장  
외래·검역병해충  
예찰·방제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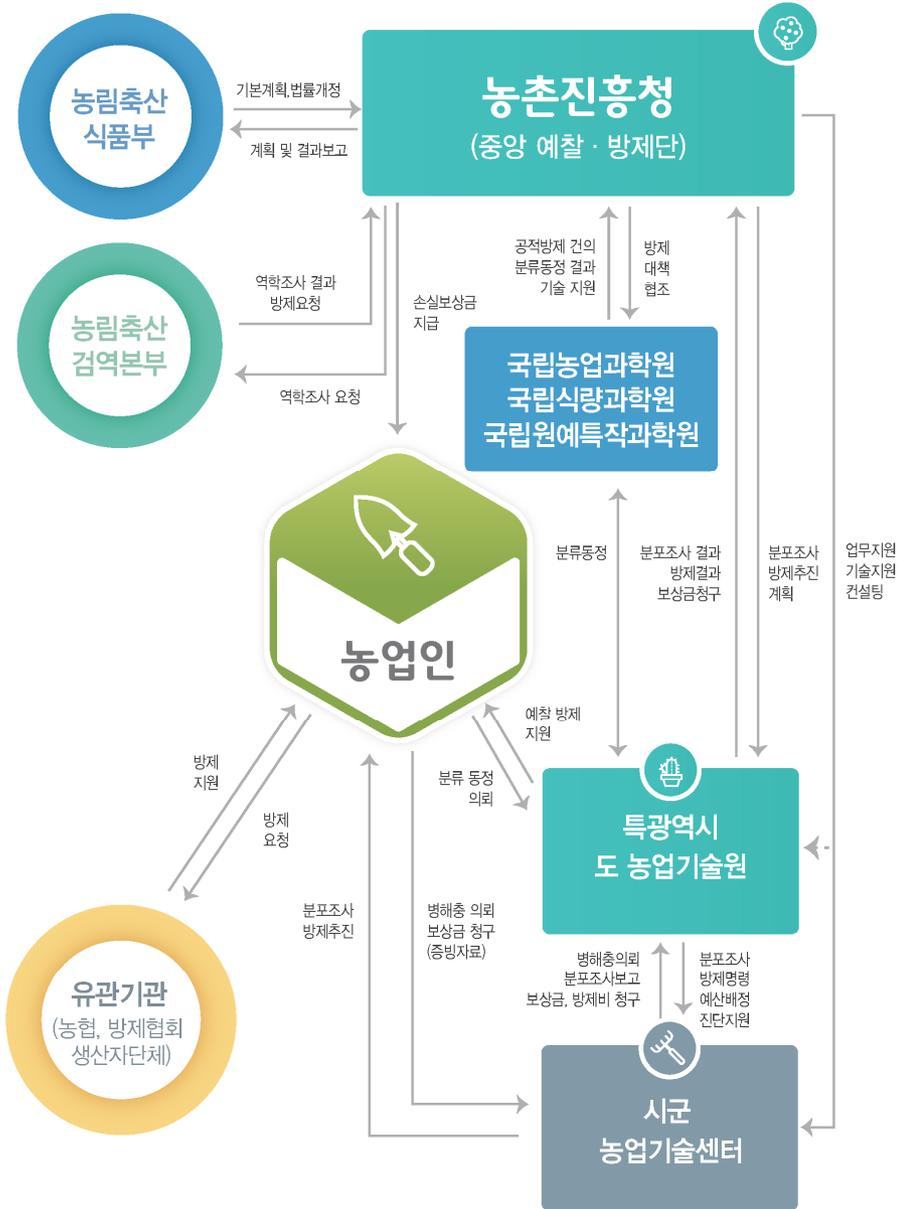
## 외래·검역병해충 예찰·방제



### 1. 위기해소 단계별 세부대책

단 계	수 행 내 용
예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작물재배 포장 및 우심농경지 예찰</li> <li>○ 농가신고 등 병해충 의심포장 분류동정 의뢰</li> <li>○ 의심증상 발견 시 현장 출입통제 등 임시조치</li> </ul>
↓	
분류·진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심 외래·검역병해충 분류동정 및 진단</li> <li>○ 진단결과 관련기관(부서) 및 해당 지자체 통보</li> <li>○ 병해충 발생지역 전국 또는 일부지역 분포조사</li> <li>○ 병해충 감염원, 유입경로 등 역학조사 지원</li> <li>○ 병해충 공적방제 추진여부를 위한 위험평가</li> </ul>
↓	
방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적방제 추진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현장 임시조치 확대</li> <li>○ 공적방제 추진 결정을 위한 병해충 방제대책회의</li> <li>○ 공적방제 기본방향 및 방제방법 등의 계획수립</li> <li>○ 대상자 및 해당 시·군에 공적방제 명령서 발부</li> <li>○ 지역실정에 맞는 공적방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</li> <li>○ 방제결과 보고 및 손실보상금 청구</li> <li>○ 손실보상 산출액에 이의가 있을시 손실보상금 대책회의</li> </ul>
↓	
방제(박멸) 선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적방제 결과 보고 후 공적방제 효과 확인</li> <li>○ 해당 병해충의 재발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</li> </ul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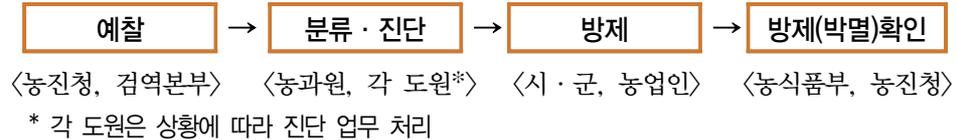
### 〈공적방제 업무 체계도〉





## 2. 조치내용

### 가. 검역병해충 발생 시 단계별 조치



### 나. 단계별 조치내용

#### 1) 예찰

##### ⚙️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 단계별 예찰

- ❖ 주체: 농촌진흥기관, 농림축산검역본부
  - 농작물 재배포장, 우심농경지, 농산물 수출단지 예찰
  - 농가신고 등 지자체 상시 예찰에 의한 의심병해충 발생 시 즉시 분류동정 의뢰
  - 금지병해충 발생 시 공적방제 계획 수립 후 즉시 방제명령(긴급방제)

#### 2) 분류동정과 분석, 진단

##### ⚙️ 병해충 분류동정

- ❖ 주체: 농과원(주관), 식량원, 원예원, 도원 연구부서
  - 의뢰 병해충의 분류, 생리·생태, 방제방법 등 분류동정

##### ⚙️ 분류동정 결과 통보

- ❖ 주체: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
  - 병해충 분류동정 결과 통보(분류동정 기관→농진청, 검역본부, 해당 시·도)

## ⚙️ 분포조사

### ❖ 주체 : 농촌진흥청

- 내용 : 발생지역 중심 전국 또는 일부지역을 정밀 분포조사
  - 농촌진흥청 : 분포조사 계획 수립 → 시·도지사에 통보
  - 시·도지사 :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

※ 정당한 사유 없이 분포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 벌금 : 식물방역법 제48조의2(벌칙)

## ⚙️ 역학조사

### ❖ 주체 : 농림축산검역본부

- 내용 : 병해충의 발생현황 및 피해의 정도, 병해충의 감염원, 유입경로 및 확산경로, 그 밖에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

※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 벌금 : 식물방역법 제48조의2(벌칙)

## ⚙️ 위험평가(병해충 위험평가위원회)

### ❖ 주체 :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(작물보호과)

#### • 병해충위험평가 주요 내용

- 대상 병해충의 외래병해충 여부, 생리·생태적 특성, 대상 병해충으로 인한 예상 피해정도, 긴급방제 추진의 필요성과 방제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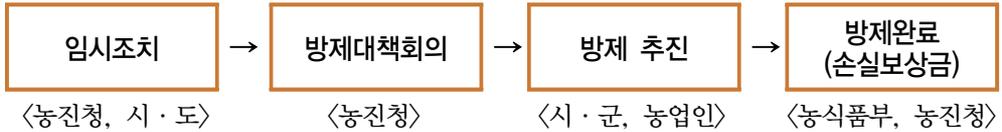
※ 농작물 병해충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(농촌진흥청고시 제2017-39호)

#### • 위원회 구성

- 위원장 :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장
- 당연직 위원 : 농진청(재해대응과장, 작물보호과장, 작물기초기반과장, 원예특작환경과장), 농림축산검역본부(위험관리과장)
- 위촉직 위원 : 농진청 및 소속기관의 식물방제관, 검역본부(식물검역관), 병해충 전문가 등 10명 이내(위촉직위원의 임기 2년)

### 3) 방제절차

#### » 절차 및 담당부서



#### » 방제추진절차

##### ⚙️ 임시조치

- ❖ 주체 : 농촌진흥청 또는 시도지사
  - 내용 : 해당 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해 공적방제 추진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출입 통제, 약제 살포 등의 조치를 취함

##### ⚙️ 병해충 방제대책회의 개최

- ❖ 주체 : 농촌진흥청
  - 내용 : 해당 병해충의 공적방제 추진 및 방제방법 등을 결정
    - 의 장 : 중앙예찰방제단장(농촌지원국장)
    - 당연직 : 농진청(재해대응과장, 연구운영과장, 운영지원과장, 작물보호과장, 작물기초기반과장, 원예특작환경과장), 농림축산검역본부(식물방제과장)
    - 위촉직 : 해당 시도(시·군·구)예찰방제단장, 병해충 전문가 5명 이내

##### ⚙️ 공적방제 계획 수립

- ❖ 주체 : 농촌진흥청 또는 시도지사
  - 내용 : 대상 병해충 방제계획을 수립·시행
    - 방제의 기본방향, 방제지역 및 기간, 대상 병해충의 종류 등 구체적인 방제의 내용 등 계획 수립 시행

### ❁ 공적방제 명령서 발급

- ❖ 주체 : 농촌진흥청 또는 시도지사 (긴급명령 : 검역본부장 포함)
  - 내용 : 방제대상 식물 등의 소유자에게 방제명령서를 발급
  - 대상자, 조치내용, 품목, 장소, 기간, 소재지, 조치방법 등을 기재
  - 방제명령 시행 14일 전에 공고(제외 : 긴급방제)
- ※ 방제명령 또는 식물방제관 조치명령 위반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: 식물방역법 제47조(벌칙)

### ❁ 공적방제 추진

- ❖ 주체 : 시·군
  - 내용 : 지역 여건에 맞게 공적방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
  - 식물방제관은 방제현장에 입회, 지도 및 감독
  -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예찰한 공적방제 병해충은 식물검역관이 참석
  - 방제는 적용약제와 사용방법을 적용하나, 적용약제가 없으시 병해충 방제 대책회의에서 결정한 방제방법 준수
  - 공적방제 대상식물의 폐기(매물, 소각, 증열처리, 가공처리)는 수출입식물 검역소독처리규정의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(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)을 준용
- ※ 소독폐기 조치명령 위반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: 식물방역법 제47조(벌칙)

### ❁ 방제결과 보고 및 손실보상금 청구

- ❖ 주체 : 시·군, 농업인
  - 시·군에서는 방제완료 후 바로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 보고하고 국가 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(NCPMS)에 입력
  - 방제기간이 수년에 걸친 경우에는 매 연도별 이행사항 보고
  - 공적방제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보상
    - 농촌진흥청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(농촌진흥청 고시 제2017-37호)
  - 방제명령이행 후 30일 이내에 손실보상청구서와 증빙서류 첨부하여 시·군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
  - 시도지사는 손실보상 청구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진흥청에 제출

### ❁ 손실보상금 평가단

#### ❖ 주체 : 농촌진흥청

- 내용 : 농가의 청구금액이 손실보상 산출방법에 따른 보상액보다 많거나, 생계안정비용 지원의 적정성 여부, 기타 이의신청이 있을시 손실보상금 평가단으로 하여금 결정
- 단장 : 중앙병해충예찰·방제단장(농촌지원국장)
- 위원 : 중앙병해충예찰·방제단의 각 대책반장(재해대응과장, 작물보호과장, 작물기초기반과장, 원예특작환경과장), 해당 지역 시도병해충예찰·방제단장,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이 추천자, 해당 지역 시도 병해충예찰·방제단장이 추천한 사람

## 4) 방제(박멸)선언

### ❁ 방제효과 확인

#### ❖ 주체 : 농진청, 시·도, 시·군, 검역본부

- 내용 : 병해충별 예찰·방제요령에 따라 병해충 일정기간 방제효과를 확인하고 등재되지 않은 병해충은 유사한 병해충을 준용

### ❁ 해당기관

- 공적방제 완료 후 다음해에 재발방지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점검
- 해당 병해충의 발생 시기에 현장점검 및 인근지역 예찰 및 결과보고

### ❁ 농업인

- 병해충 재발방지를 위한 재배방법 및 방제철저, 발생 시 즉시 보고

### ❁ 토지의 발굴허가

- 발굴 금지기간 내에 토지를 발굴하려는 자는 토지 발굴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통하여 농촌진흥청 또는 시·도지사에 제출
-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

❁ 방제(박멸)선언

❖ 주체 : 농촌진흥청, 농림축산식품부(농림축산검역본부)

- 절차 : 정책제안 →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관련기관 협의회 → 박멸선언
- 내용
  - 병해충 예찰·방제 기본지침(농림축산식품부) 병해충별 예찰·방제요령에 따라 병해충 일정기간 방제효과를 확인하고 등재되지 않은 병해충은 유사한 병해충을 준용
  - 병해충별 예찰·방제요령에 정한 기간 동안 무발생이 확인되면 박멸선언
    - \* 농촌진흥청,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서 학술지, 관보, 농작물병해충 발생 정보 등에 게재하고 APPPC(아태지역식물보호위원회), IPPC(국제식물 보호협약) 등 국제기구에 통보
    - \* 근거 : 병해충 예찰·방제 기본지침(농림축산식품부)

❁ 재발방지

- 공적방제 완료 농가가 방제소홀로 인하여 해당 병해충이 재발생 되었을 때 손실보상금 경감기준을 적용
  - \* 1회 재발생(25%), 2회 재발생(50%), 3회 재발생(100%)

※ 손실보상금 경감기준(식물방역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, 농촌진흥청 방제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별표 2)

방 제 사 유	경감률(%)	비 고
• 공적방제 명령 원인과 관계없이 방제를 이행한 사람	-	
• 공적방제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과실이 있거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행정기관의 조치사항(사전방제 등)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</li> </ul> </li> <li>-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농작물을 방치한 농경지에서 발생한 경우 등</li> </ul> </li> <li>- 고의가 있는 사람</li> </ul>	25 50 100	
•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물에서 외래병해충이 발생되어 공적방제 명령을 받은 사람	100	고발 조치



### 3. 기관별/부서별 임무 및 역할

#### »가. 농촌진흥청

##### 1) 본청

- 중앙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 운영
- 예찰·방제 사업지침 수립 및 예찰·방제 실무 매뉴얼 마련
- 우심지역 농경지 예찰에 의한 의심 병해충 발견 시 분류동정 의뢰
- 해당 병해충 발생포장의 실제적 분포조사 계획수립 및 요청
- 외래·검역병해충 합동예찰 계획수립 및 역학조사 지원
- 공적방제 추진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임시조치 통보
- 공적방제 추진 및 방제방법 결정을 위한 병해충 방제대책회의 운영
- 공적방제 기본방향 및 방제방법 등의 계획수립
- 대상자 및 해당 시·군에 공적방제 명령서 발부
- 시·도 및 시·군 방제추진사항 점검
- 식물방제관 및 예찰조사원 운영
- 손실보상 및 생계안정비용 등에 관한 업무
- 손실보상 산출액에 이의가 있을시 손실보상금 평가단 운영
- 방제비 시·도 예산배정 및 손실보상금 집행
- 농진청, 시·도, 시·군, 검역본부 등 합동으로 방제결과 확인
- 공적방제 완료 후 사후관리 점검, 매몰지 관리 점검

##### 2) 연구기관(농과원, 식량원, 원예원, 도원 연구부서)

- 의심 병해충 분류동정 후 진단결과를 신속히 농식품부, 재해대응과, 검역본부 (필요시), 시·도지사에 통보
- ※ 새로운 병해충 및 검역병해충 분류동정 결과 농진청 재해대응과와 사전협의 후 공문처리
- 외래병해충 여부, 예상 피해정도, 긴급방제 필요성 및 방제방법 등 평가를 위한 병해충 위험평가위원회 개최(국립농업과학원)
- 해당 병해충의 생리·생태 및 방제 방법 자료 제공
- 검역병해충의 방제가능 약제 선발 및 직권등록 추진

## » 나. 시·도

- 시·도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
- 우심지역 농경지 예찰에 의한 의심 병해충 발견 시 분류동정 의뢰
- 외래·검역병해충 현장예찰 및 역학조사 지원
- 공적방제 추진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임시조치 통보
- 해당 병해충 발생포장의 실제적 분포조사 세부계획 및 결과 보고
- 공적방제 세부계획 수립 및 명령서 발부
- 방제현장 입회, 지도 점검, 교육 등
- 손실보상 및 생계안정비용 등에 관한 업무
- 방제결과, 손실보상금 청구 및 증빙자료 검토 후 제출
- 시·군에 방제비 예산 배정
- 공적방제 완료 후 사후관리 점검

## » 다. 시·군

- 시·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
  - 공동방제단 구성 : 행정, 농협, 영농조합 등 장비 및 인력 협조로 구성
- 우심지역 농경지 예찰에 의한 의심 병해충 발견 시 분류동정 의뢰
- 외래·검역병해충 현장예찰 및 역학조사 지원
- 공적방제 추진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임시조치 수행
- 해당 병해충 발생포장의 실제적 분포조사 결과 보고
- 공적방제 세부계획수립 및 농업인 교육·홍보
- 방제완료 결과보고
- 방제비 예산 집행 및 손실보상금 청구
  - 손실보상금 및 방제비 증빙자료 검토·제출
- 공적방제 완료 후 사후관리 점검, 매몰지 등 관리

## » 라. 지원부서

### 1) 농림축산식품부

- 검역정책과, 식량산업과
  - 식물병해충 예찰·방제 기본지침 수립 및 식물방역법 개정
  - 외래·검역병해충 발생·방제상황 유지 및 부처 협력 대응·조정
- 농림축산검역본부
  - 외래·검역병해충 정보수집, 예찰(농산물 수출단지 등) 및 역학조사 실시
  - 외래·검역병해충 위험평가 지원 및 예찰·방제 매뉴얼 공동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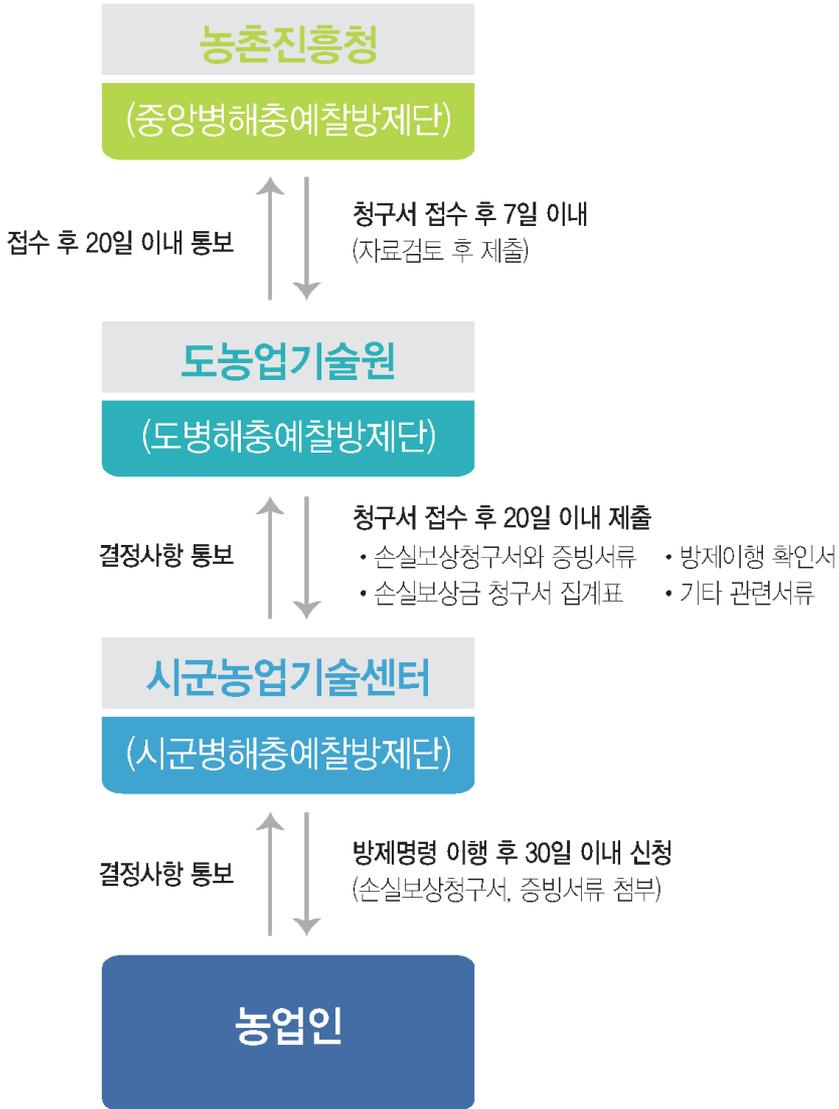
### 2) 유관기관 및 협회

- 농협
  - 공적방제 관련 농약 확보 및 공급
  - 공적방제 추진에 필요한 방제기, 인력 등 공동 방제단 구성 협조
- 민간 방제단(한국농업무인헬기협회 등)
  - 공적방제 추진에 필요한 방제기, 드론, 인력 등 공동 방제단 구성 협조

## » 마. 농업인

- 의심병해충 발생 시 임시조치 및 신고의무 준수
- 공적방제 명령서에 따른 방제 필히 이행
- 공적방제 완료 후 재발생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이행
- 공적방제 사업 방제비 및 손실보상금 관련 증빙자료 제출
- 토지를 발굴하려는 자는 토지 발굴 허가신청서 제출

참고 1 | 손실보상금 청구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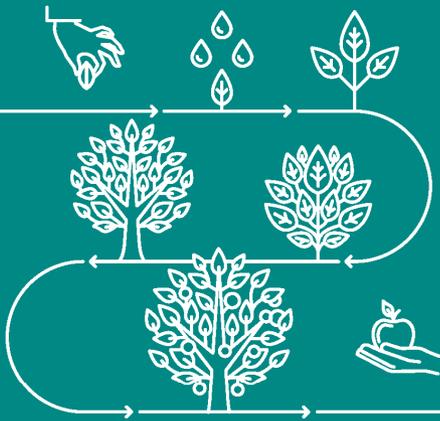


참고 2 | 공적방제 업무 체계도





# 별지서식





[별지 1호서식]

### 벼 병해충 발생 상황

제목 : 순회예찰에 의한 벼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						
조사일 : 20 . .						
○ 못자리 주요 병해충						
구 분	발 생 상 황				발 생 주 품 종	
	시군수	읍면수	면적	필지수		
모도열병 벼물바구미						
- 발생면적 최소단위 : 0.01ha - 필지 수는 발생못자리 개소수임 ※ 비닐하우스 육묘 시는 1개 하우스, 1개 못자리로 간주 조사						
○ 본 논 주요 병해충						
구분	발 생 상 황					발생주품종
	시군수	면적	조 사 필지수	발생 필지수	%	
잎도열병 이삭도열병 벼물바구미 떡노린재		ha				
- 발생면적 최소단위 : 0.1ha - 발생면적은 벼물바구미 대상임 - 발생주품종은 다발생품종 순위로 10개품종이내 기재						

[별지 2호서식]

### 병해충 피해 상황

제목 : ○○○병(해충) 피해상황 보고

조사일 : 20 . . .

구 분	피 해 상 황				재배작물(품종)
	읍면주소	지번	면적	농가명	
모도열병					
벼물바구미					

- 발생면적 최소단위 : 0.01ha
- 필지 수는 발생포장 개소수임

병해충 피해상황

○

-

조치 상황

○

-

요구 사항

○

-

[별지 3호서식]

### 당면 주요 벼 병해충 예찰결과

□ 병해충 발생상황 개요

- 
- 

□ 발생상황

- 벼멸구·흰등멸구 등

조사 지역	조사 필지수	벼멸구					흰등멸구				
		발생필지		방제대상필지		20주당 최고 밀도	발생필지		방제대상필지		20주당 최고 밀도
		필지수	비율 (%)	필지수	비율 (%)		필지수	비율 (%)	필지수	비율 (%)	
계											

※ 요방제 밀도(중만생중 기준) : 벼멸구 5마리/주, 단시성충은 2마리/주  
 흰등멸구 20마리/주

- 흑명나방

조사지역	조사 필지수	피해주율(%)		성충밀도(마리)		비 고
		최고	평균	최고	평균	
계						

※ 성충밀도는 5회 타락 시 발견된 성충수임

- 기타 병해충(문고병, 백엽고병 등 특이사항)

-  
-

[별지 4호서식]

## 벼멸구 중점 방제 「중앙(도)기술지원단」 운영 결과보고

□ 일 시 : 20 . . . . ~ . . . .

□ 장 소 : 도 시군

□ 출 장 자 :

□ 벼멸구 발생 및 방제현황

○ 발생현황

시군	벼 식부면적(ha)		발생면적(ha)	
	본년	전년	본년	전년
계				
○○시				
○○군				

○ 방제현황

시군	방제면적(ha)		방제비 집행액(천원)	
	본년	전년	본년	전년
계				
○○시				
○○군				

□ 시군 자체 기술지원 및 홍보 실적

시군	기술지도 실적			홍보 실적		
	교육	현장 지도	자료 제작	TV, 라디오	신문	SMS
계	회 명	회 명	종 부	회	회	회 명
○○시						
○○군						

□ 기술지원 내용

- 
- 
- 

□ 우수사례 및 건의사항

- 
- 
- 

□ 기타 특이동향

- 
- 
- 

□ 금후대책

- 
- 
- 

□ 관련사진

000 공동방제	000	000

[별지 5호 서식]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 월동난 조사

### 갈색날개매미충 월동난 예찰 결과(○○도)

시군명	갈색날개매미충 월동난 조사 결과									
	농경지		농경지 주변지역		합계					
	조사 면적(ha)	발생 면적(ha)	조사 면적(ha)	발생 면적(ha)	조사 면적(ha)	발생면적(ha)				
계						소	중	다	심	
계										
00시										
00군										

### 꽃매미 월동난 예찰 결과(○○도)

시군명	꽃매미 월동난 조사 결과									
	농경지		농경지 주변지역		합계					
	조사 면적(ha)	발생 면적(ha)	조사 면적(ha)	발생 면적(ha)	조사 면적(ha)	발생면적(ha)				
계						소	중	다	심	
계										
00시										
00군										

## 갈색날개매미충 월동난 농경지 발생정도 현황(○○도)

시군명	발생필지 주소	발생작물	발생정도(발생율,%) (심-다-중-소)	발생면적 (ha)
00시			소(20)	
			중(45)	
00군			다(60)	
			심(85)	

## 꽃매미 월동난 농경지 발생정도 현황(○○도)

시군명	발생필지 주소	발생작물	발생정도(발생율,%) (심-다-중-소)	발생면적 (ha)
00시				
00군				

\* 예 : 특정 필지 조사에서 10주의 어린가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난괴가 3주에만 있을 경우 발생정도는 “중” 이라고 작성하고 발생율은 옆에 “30”이라고 기재함

[별지 6호 서식]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 성충 조사

### 갈색날개매미충 조사 집계표(○○도)

시군명	갈색날개매미충 조사 결과									
	농경지		농경지 주변지역		합계					
	조사 면적(ha)	발생 면적(ha)	조사 면적(ha)	발생 면적(ha)	조사 면적(ha)	발생면적(ha)				
계						소	중	다	심	
계										
00시										
00군										

### 미국선녀벌레 조사 집계표(○○도)

시군명	미국선녀벌레 조사 결과									
	농경지		농경지 주변지역		합계					
	조사 면적(ha)	발생 면적(ha)	조사 면적(ha)	발생 면적(ha)	조사 면적(ha)	발생면적(ha)				
계						소	중	다	심	
계										
00시										
00군										

## 꽃매미 조사 집계표(○○도)

시군명	꽃매미 조사 결과									
	농경지		농경지 주변지역		합계					
	조사 면적(ha)	발생 면적(ha)	조사 면적(ha)	발생 면적(ha)	조사 면적(ha)	발생면적(ha)				
						계	소	중	다	심
계										
00시										
00군										

## 갈색여치 조사 집계표(○○도)

시군명	꽃매미 조사 결과									
	농경지		농경지 주변지역		합계					
	조사 면적(ha)	발생 면적(ha)	조사 면적(ha)	발생 면적(ha)	조사 면적(ha)	발생면적(ha)				
						계	소	중	다	심
계										
00시										
00군										

### 갈색날개매미충 농경지 발생정도 현황(○○도)

시군명	발생필지 주소	발생 작물	발생정도(발생율,%) (소-중-다-심)	발생면적 (ha)	비고
00시			소(20)		성충(50%), 약충(50%)
			중(45)		
			다(60)		
			심(85)		

### 미국선녀벌레 농경지 발생정도 현황(○○도)

시군명	발생필지 주소	발생 작물	발생정도(발생율,%) (소-중-다-심)	발생면적 (ha)	비고
00시			소(20)		성충(50%), 약충(50%)
			중(45)		
			다(60)		
			심(85)		

\* 예 : 특정 필지 조사에서 최소 10주의 어린가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충·성충 또는 피해입은 주수가 3주에만 있을 경우 발생정도는 “중” 이라고 작성하고 발생율은 옆에 “30”이라고 기재함

## 꽃매미 농경지 발생정도 현황(○○도)

시군명	발생필지 주소	발생 작물	발생정도(발생율,%) (소-중-다-심)	발생면적 (ha)	비고
00시			소(20)		성충(50%), 약충(50%)
			중(45)		
			다(60)		
			심(85)		

## 갈색여치 농경지 발생정도 현황(○○도)

시군명	발생필지 주소	발생 작물	발생정도(발생율,%) (소-중-다-심)	발생면적 (ha)	비고
00시			소(20)		성충(50%), 약충(50%)
			중(45)		
			다(60)		
			심(85)		

\* 예 : 특정 필지 조사에서 최소 10주의 어린가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충·성충 또는 피해입은 주수가 3주에만 있을 경우 발생정도는 “중” 이라고 작성하고 발생율은 옆에 “30”이라고 기재함

[별지 7호 서식]

### 병해충 발생 신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
신고자	성 명	생년월일
	주 소	전화번호
신고 내용	병해충 구분	[ ] 병 [ ] 해충 [ ] 잡초
	발견 일자	년 월 일
	발생지역 (주소)	
	발생 농작물	
	피해 증상	

「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에 관한 규정」 제14조의2 및 제28조에 따라 병해충 발생 사실을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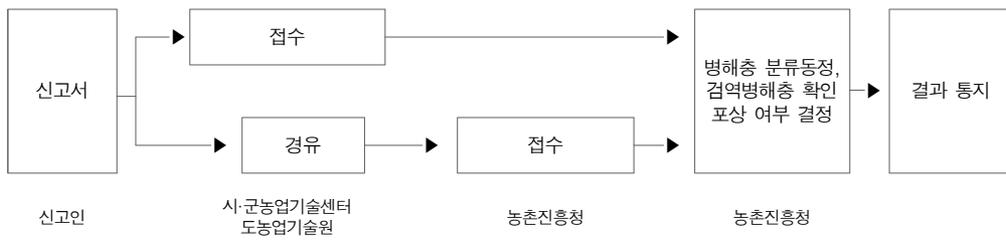
년 월 일  
(서명 또는 인)

신 고 자

농촌진흥청장 귀하  
시·도지사

첨부서류	1. 농작물 피해 증상 사진 2. 신고 병해충 사진이나 병해충 표본	수수료 없 음
------	--	------------

#### 처 리 절 차

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<sup>2</sup>]

[별지 8호 서식]

### 병해충 정밀검사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
------	-----

신 고 자	성 명	생년월일
	주 소	전화번호

신고 내용	병해충 구분	[ ] 병 [ ] 해충 [ ] 잡초
	추정 병해충명	
	발견 일자	년 월 일
	발생(발견)지역 (주소)	
	재배자 성명	
	발생 농작물 (품종 등)	
	피해증상 및 발생상황	

「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에 따라 병해충 발생 사진 및 시료를 첨부하여 정밀검사를 의뢰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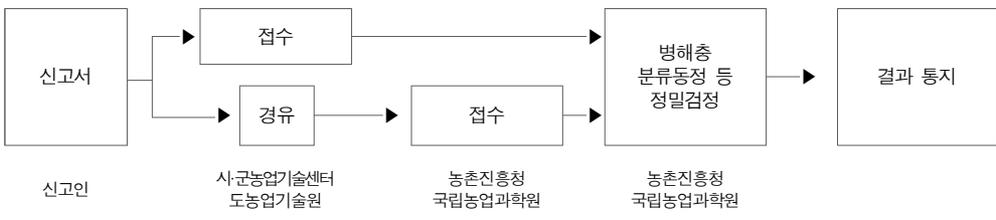
년 월 일  
(서명 또는 인)

신 고 자

농촌진흥청장  
국립농업과학원장 귀하

첨부	1. 농작물 피해 증상 및 신고 병해충 사진 2. 농작물 피해 증상 시료 및 신고 병해충 표본	수수료 없음
----	---	-----------

#### 처 리 절 차

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<sup>2</sup>]

[별지 9호 서식]

## 농작물 병해충 대처 추진 상황(농진청 작성 보고양식)

20 . 00. 00(월)

재해대응과

### 1 발생상황

- 발생 병해충명 : ○○○병해충
- 발생지역 : 충북 천안, 진천 등 4개소
  - 소재지, 대상작물, 면적 등
- 주요내용
  - 발생지역 병해충 발생 밀도 및 병 감염률 등

### 2 조치상황

- 전국 예찰강화 및 지시(시·도)
- (임시조치) 농가 방문 긴급방제 협조 요청(시·도)
  - 발생농가 및 주변농가(반경 200m 이내)
- 병해충 피해 최소화 요령 인터뷰(6.18, KBS 9시뉴스, 재해대응과장)
- “병해충 대비 농작물 관리 철저” 언론 보도 : 6. 18(연합뉴스 등 4)
- 병해충 대비 농작물 관리요령 전파 : 2회(6.17, 6.10), 농식품부, 지방기관
- 병해충 사전 대비 SMS 전파(6.17~18) : 1,267건, SNS홍보 등

### 3 금후계획

- 주요 발생지역 사전 긴급 방제비 편성 지원 계획 수립
- 발생지역 일손돕기 추진 계획 수립
- 병해충 발생지역 피해상황 및 진행상황 모니터링(계속)

이 매뉴얼은 2018. 12.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식물방역법 등 관계법령 및 규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---

## 농작물 병해충 위기대응 실무매뉴얼(2018. 12. 개정)

---

발 행 일 2018년 12월

I S B N 978-89-480-5786-7 93520

발 행 인 농촌진흥청장 김경규

편 집 인 농촌지원국장 김상남

집 필 인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  
정준용, 노형일, 채익석, 홍성준, 이경재

발 행 처 농촌진흥청

주소. 560-5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

TEL. (063)238-1046~1050

Homepage : <http://www.rda.go.kr>

인 쇄 도서출판 학예사

TEL. (063)286-5959

---

※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.

(비매품)